

제4차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3高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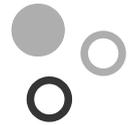


주최 |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주관 |  국회의원 김경만·김교흥·김한정·이용빈·이용선·이원욱·이장섭·정태호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소개

---

### ■ 목적

-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민생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민생위기 극복’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입법과제’를 제안하는 연속토론회 추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전문가 중심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중고로 인한 경제와 민생 위기를 진단하고, ‘민생회복’ 방향과 해법 모색
- ✓ 연속토론회(8회), 매회 세미나 결과 언론브리핑, 원내 정책·입법과제 제안 등

### ■ 행사 개요

- 시 기 : 2023년 3월 08일(수)~4월 26일(수), 14:00~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코로나 확산 시 온라인 화상회의만 진행)
- 행사명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 주 최 : 민주연구원 X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 주 관 : 매회 과제별(분과별) 책임의원(# 명단 아래 참조)
- 참 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

### ■ 운영 방향

- 국회의원(책임의원) 좌장·토론자로, 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 전문가를 발제·토론자로 섭외
- 사전에 관련 민생의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현안 리스트 정리
- 연속토론회 진행 후 제안된 입법과 정책에 대한 추진 등 실사구시적 운영
- 참여 의원이 많을 경우 금융, 노동, 주거, 공정경제 등 분야별 분과 구성 및 운영

### ■ 진행 방식

- 진행 방식
  - 매회 각 분야별 좌장을 맡은 국회의원이 정책 및 입법 과제를 전담하고 추진하는 ‘과제별 책임의원제’ 를 도입해 토론회의 책임성 확보

- 분과별(과제별) 책임의원 사전 모집(총 39명)

- (총 론) 박주민(좌장), 김영배(간사/토론), 민병덕, 우원식, 정태호, 홍기원 국회의원
- (금 융) 박주민(좌장), 민병덕(간사/토론), 김성주, 신동근, 양경숙, 오기형, 이동주 국회의원
- (주거·부동산) 전해숙(좌장), 조오섭(간사/토론), 박상혁, 서동용, 윤준병, 이수진(지), 홍기원 국회의원
- (중소기업) 정태호(좌장), 김경만(간사/토론), 김교홍, 김한정,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장섭 국회의원
- (소상공인) 서영교(좌장), 이동주(간사/토론), 김경만, 김주영, 민병덕, 박주민, 윤영덕 국회의원
- (노동·고용1) 이학영(좌장), 이수진(비)(간사/토론), 어기구, 최인호 국회의원
- (노동·고용2) 홍익표(좌장), 유정주(간사/토론), 김승원, 소병훈 국회의원
- (노동·고용3) 남인순(좌장), 최혜영(간사/토론), 권인숙, 서영석 국회의원

- 토론회 진행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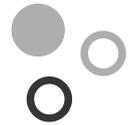
토론회 전	토론회	토론회 후	최종
국회의원,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과제 논의 및 방향 설정 간담회	⇒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제 및 토론	⇒ 매회 토론회 결과 언론브리핑	⇒ 토론회 결과 정책위 등 전달 및 과제 수행

○ 진 행 : 3.8.(수) ~ 4.26.(수), 주 1회(수요일), 14:00~16:00(120분), 총 8회

- (1~4차) 매회 주제발표 50분(2인), 지정토론 45분(3인), 청중토론 20분(자유토론)
- (5~8차) 매회 주제발표 30분(1인), 지정토론 60분(4인), 청중토론 25분(자유토론)
- 매회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과정에 참여
- 유튜브 동시 생중계 : 텔리민주 TV 등

○ 결과물 활용 방안

- 매회 토론회 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 : 토론회 직후(16:40), 국회 소통관
  - 언론브리핑 현장에 각 분과 책임의원 전원 + 박주민, 정태호 국회의원 참석
  - 언론브리핑 내용 정리한 보고서 발간 : '민생회복 00대 과제' (5월 초)
-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에게 정책 제안(5월 중순)을 통해 입법 추진
  -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공정경제 정책 및 입법과제 제언
  - 2024년 제22대 총선 민생·공정경제 관련 공약 제언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 기간 : 2023. 3월 ~ 4월(총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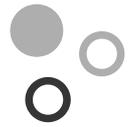
○ 주최 : 민주연구원 x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분야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제1회 (총론)	2023.3.08.(수) 14:00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제: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li> <li>내 용: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중고로 인한 거시경제 위기와 영향 진단, 국제경제 질서 속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 진단,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회복으로 경제 위기 극복 방향 모색</li> <li>좌 장: 박주민 국회의원(책임의원)</li> <li>발제1: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li> <li>발제2: 최지은 민주연구원 부원장</li> <li>토론1: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변호사</li> <li>토론2: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li> <li>토론3: 김영배 국회의원(책임의원)</li> </ul>
제2회 (금융)	2023.3.15.(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제: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li> <li>내 용: 자영업자, 영끌세대, 서민에 대한 채무상당과 재기 지원을 결합한 원스톱 채무자 지원행정, 채무자의 채무조정 상담 및 재기지원(업종·직업전환, 재창업 등)</li> <li>좌 장: 박주민 국회의원(책임의원)</li> <li>발제1: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li> <li>발제2: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 변호사</li> <li>토론1: 박정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 변호사</li> <li>토론2: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li> <li>토론3: 민병덕 국회의원(책임의원)</li> </ul>
제3회 (주거·부동산)	2023.3.22.(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제: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li> <li>내 용: 무주택 세입자 피해구제(전세사기 피해, 경매단계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경락대금 세입자 우선매수권 행사 등),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대책 (매입임대 확대 등 임대지원 강화)</li> <li>좌 장: 전해숙 국회의원(책임의원)</li> <li>발제1: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li> <li>발제2: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li> <li>토론1: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li> <li>토론2: 김대진 세입자114 사무처장 / 변호사</li> <li>토론3: 권지웅 前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li> <li>토론4: 조오섭 국회의원(책임의원)</li> </ul>

분야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제4회 (중소기업)	2023.3.29.(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제: 중소기업의 3고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li> <li>내 용: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 등 기술변화에 따른 위기와 대안 모색, 기후·에너지 위기,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위기와 대안 모색,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협회의 단체교섭권, 원재료 공급가격 사전예고제, 정의로운 업종·직업전환 지원 등</li> <li>좌 장: 정태호 국회의원(책임의원)</li> <li>발제1: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위원</li> <li>발제2: 서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변호사</li> <li>토론1: 양찬희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li> <li>토론2: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li> <li>토론3: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li> <li>토론4: 김경만 국회의원(책임의원)</li> </ul>
제5회 (소상공인)	2023.4.05.(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제: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li> <li>내 용: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독과점 폐해로 인한 위기와 대안 모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및 임대료 부담완화, 지역화폐 정책 지원 등</li> <li>좌 장: 서영교 국회의원(책임의원)</li> <li>발 제: 김남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변호사</li> <li>토론1: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li> <li>토론2: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li> <li>토론3: 김현성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前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li> <li>토론4: 이동주 국회의원(책임의원)</li> </ul>
제6회 (노동·고용) ①	2023.4.12.(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li> <li>내 용: 기후위기,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의 노동과 고용,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등 노동자 개념의 확대 및 단체교섭권 부여, 화물차 안전운임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협약 등 모색</li> <li>좌 장: 이학영 국회의원(책임의원)</li> <li>발 제: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li> <li>토론1: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li> <li>토론2: 한선범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국장</li> <li>토론3: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li> <li>토론4: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책임의원)</li> </ul>
제7회 (노동·고용) ②	2023.4.19.(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제: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방안</li> <li>내 용: 웹툰작가의 정신건강, 신체건강 실태조사 보고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 모색, 콘텐츠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위한 제도 논의, 문화예술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 등</li> <li>좌 장: 홍익표 국회의원(책임의원)</li> <li>발제1: 김종휘 변호사 / 前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li> <li>발제2: 김민규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li> <li>토론1: 범유경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위원 / 변호사</li> <li>토론2: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li> <li>토론3: 유정주 국회의원(책임의원)</li> </ul>

분야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제8회 (노동·고용) ③	2023.4.26.(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제: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와 극복 방안</li> <li>◦ 내 용: 돌봄노동자의 실태와 처우개선 등 법적 보호 방안 모색, 돌봄노동 민영화 위기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li> <li>◦ 좌 장: 남인순 국회의원(책임의원)</li> <li>◦ 발 제: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li> <li>◦ 토론1: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li> <li>◦ 토론2: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li> <li>◦ 토론3: 윤지영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li> <li>◦ 토론4: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li> <li>◦ 토론5: 최혜영 국회의원(책임의원)</li> </ul>

# Program



## ■ 개요

- 일 시 : 2023.3.29.(수) 14:00 ~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 제 : 중소기업의 3고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 주 최 :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 ■ 진행순서

시간		순서		주요 내용
~14:00		사전등록		
※ 진행사회: 박정식 실장(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실)				
14:00~14:10	10분	사전행사		◦ 개회선언/국민의례/내·외빈 소개
14:10~14:25	15분	발제 및 토론	장내정리 인사말	◦ 좌장: 정태호 국회의원(책임의원)
14:25~15:05	40분		발제	발제1 ◦ 주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과제 - 발표: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발제2 ◦ 주제: 3고와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방안 - 발표: 서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변호사
15:05~15:45	40분		지정토론	◦ 주제: 中企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 발표: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 주제: 디지털과 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은 중소기업에게 위기인가? - 발표: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 디지털화 및 산업구조 전환과 가맹·대리점주 등 소기업 위기 및 극복 방안 -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15:45~16:00	15분	종합토론	◦ 주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공정 거래 개선 과제 - 발표: 김경만 국회의원(책임의원)	
			◦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 Contents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소개 ..... i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 iii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4회 프로그램 ..... vi
- 목차 ..... vii

## ■ 발제문

1.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과제 ..... 1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2. 3高와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방안 ..... 25  
서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변호사

## ■ 토론문

1. 中企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 41  
양찬희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2. 디지털과 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은 중소기업에게 위기인가? ..... 49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3. 디지털화 및 산업구조 전환과 가맹·대리점주 등 소기업 위기 및 극복 방안  
-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 57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4.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공정 거래 개선 과제 ..... 67  
김경만 국회의원



**발제 1**

#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과제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과제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과제

2023.3.29.

권승문 연구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등장과 확산</li><li>2. 해외 정의로운 정책 동향</li><li>3.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법·제도 현황</li><li>4.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현황 분석</li><li>5. 중소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li></ol>	<h1>목차</h1>
---	-------------

## 1.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등장과 확산

## 정의로운 전환의 배경과 역사

1.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등장과 확산

- 1980년대**
  - 미국의 노동운동에서 강화된 환경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이 오염산업을 떠나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제안
- 2000년대**
  - 국제노동운동 단체들이 기후·환경 의제에 반영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약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포함
- 최근**
  - 환경정의 및 기후정의 운동과 관련해 인종, 성, 계층, 지역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전략으로 확장

###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Superfund for workers)

- 1978년 미국 러브커널이라는 도시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불법매립으로 인한 최악의 토양오염 사건을 계기로 1980년 화학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법 제정,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화학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슈퍼펀드' 제도 마련**
- 1993년 미국 석유·화학·원자력노조의 토니 마조치(Tony Mazzocchi)는 **"오염 토양을 위한 슈퍼펀드가 있을 수 있다면,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
- 1990년대 중반부터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 대신 '정의로운 전환'을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 1997년에는 '정의로운 전환 동맹(Just Transition Alliance)' 설립, 환경정의 그룹과도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의제 공유 노력

### "죽은 지구에는 일자리가 없다" (There are no jobs on a dead planet)

- 국제 노동운동 단체들은 기존 직업안전보건 측면의 논의를 기후·환경 의제로 확장하면서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의 국제적 정책 무대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제안
- 국제노동조합은 **"죽은 지구에는 일자리가 없다"**는 슬로건 사용,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노동자들이 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좋은 녹색일 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 필요하다고 요구

###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전문에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당사자들이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 조치에서 비롯된 여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행동, 대응 및 영향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 퇴치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본질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중략) 국가적으로 규정된 발전 우선순위에 따라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 좋은 일자리 및 양질의 직업 창출이 매우 필요함을 고려함"

## 정의로운 전환의 배경과 역사

1.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등장과 확산

###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실레지아 선언

- 2018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취약한 지역과 계층에 대한 논의를 내포하는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실레지아 선언(Solidarity and Just Transition Silesia Declaration)'** 채택
- 국제적,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적 전환을 위한 계획과 이행에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

### 정의로운 전환 관련 실레지아 선언 주요 내용

-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 기후회복적 저탄소 발전으로의 전환에서 노동자, 도시, 지역을 지원할 때 당사국, 관련 국제기구, 감시기구,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가적응계획,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도록 한다.
  -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도시, 비도시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 기후회복적 저탄소 발전으로의 전환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한다.
-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해 관련 UN 기관들과 국제·지역 단위의 기관들, 사회파트너를 포함한 감시기구, 이해관계자, 다른 당사국들 모두 정의로운 전환 선언을 이행하는데 참여시킨다.

### 정의로운 전환 선언 채택

- 2021년 11월에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EU, 영국,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은 정의로운 전환 선언 채택
- 정의로운 전환 선언**은 전환 과정 노동자들의 새로운 일자리 지원, 사회적 대화와 이해당사자 참여 지원 및 촉진, (저개발국, 개도국 등) 탄소 집약적 경제에서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의 포용적이고 좋은 일자리(local, inclusive, and decent work) 창출,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한 전환 추진, 국가별 정의로운 전환 노력에 대한 정보의 NDC 포함 등 내용을 담고 있음

##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원칙

1.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등장과 확산

###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로운 전환 원칙

-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와 경로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합의
- 작업장에서의 기본권을 존중, 증진 및 실현하는 정책
- 환경적 도전과 기회의 젠더 측면을 강력하게 고려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전환 추진 위한 환경 제공, 경제, 환경, 사회, 교육·훈련 및 노동 영역 전반에 걸친 일관된 정책 마련
- 고용 영향 예측, 실적 및 해고에 대한 사회적 보호, 직업능력 개발 및 사회적 대화 등 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정의로운 전환 프레임워크 제공 및 단결권과 교섭권의 효과적 행사 포함
-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시 각 국가의 발전단계, 경제부문, 기업 업종과 규모 등 특수한 조건 고려(모든 상황에 맞는 하나의 정책은 없음)
- 국가 간의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 기후정의동맹(CJA)의 정의로운 전환 원칙

- **좋은삶(Buen Vivir):** 깨끗하고 건강하고 적절한 공기·물·토양·식품·교육·주거 기본권과 사람·자연의 정의로운 관계 추구
- **의미있는 노동:** 인간 잠재력의 개발 중심, 사람들의 학습과 성장, 역량과 관심을 개발할 기회 창출, 리더십 지원 및 육성
- **자기결정:**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작업장 포함 공동체내 민주적 거버넌스 필요
- **자원과 권력의 평등한 재분배:** 모든 형태의 억압에 기초한 불평등에 맞서고 변혁, 불평등 재생산 사용된 자본과 자원 재탈환
- **재생·생태적 경제:** 생태적 회복력 향상, 자원소비 감축, 생물다양성과 전통적인 삶 방식 회복, 자본주의 같은 추출경제 타파
- **문화와 전통:** 모든 전통과 문화를 포용하는 공간 창출 및 자본주의, 식민주의, 가부장제, 노예제에 의한 약탈·파괴된 땅 보상
- **연대:** 추출경제의 피해는 국경에 관계없이 발생, 해결책은 제국주의, 군사주의와 맞서는 지역, 국가, 지구적 연대 필요
- **지금 필요한 것의 건설:**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작해 추출적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확장

### 정의로운 전환 연구단의 정의로운 전환 원칙

- 적극적인 탈탄소화 추진 및 탄소 잠김 회피
- 기후변화와 감축정책으로 영향받는 노동자, 여성, 지역사회 등 MAPA(Most Affected People and Areas)의 지원
- 오염자 책임 부담과 국가의 재정투자 지원
-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결과 권력 구조의 변화 추구
- 좋은 삶, 의미 있는 노동 그리고 연대를 통한 사회의 재구성 지향
- 기후와 산업정책에서의 민주주의 원칙 실현 및 심화

6

## 2. 해외 정의로운 전환 정책 동향

## 유럽연합(EU)의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2. 해외 정의로운 전환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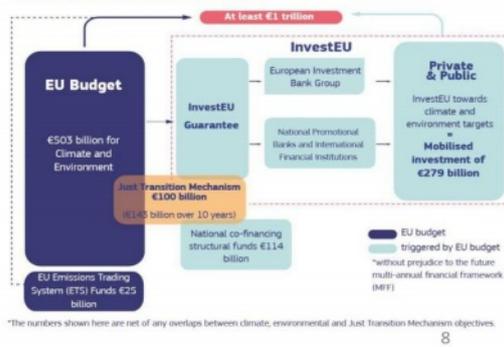
###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50 기후중립 목표 달성 위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발표
- 기후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 탄소집약적 산업 종사자들에게 피해와 비용 발생, 이러한 위험에 직면한 지역, 산업, 노동자들에 주목해 **전환이 공정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점 강조
- 그린딜의 원활한 이행과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1조 유로 규모의 재정 지원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에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TM)** 포함
- JTM은 기후중립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과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2021~2027년 동안 최소 1,000억 유로를 지원하는 내용
- JTM은 투자 지원의 3대 축(Three Pillars)으로 구성
  - ✓ **정의로운 전환 기금(Just Transition Fund):** EU 예산 75억 유로를 포함한 총 300~500억 유로로 조성
  - ✓ **InvestEU 정의로운 전환 전용 투자:** 최대 450억 유로까지 투자 지원
  - ✓ **유럽투자은행의 공공부문 융자지원:** 250~300억 유로의 투자 지원

###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Just Transition Platform)

-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JTP)**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JTM을 통해 회원국, 투자자 등에 대해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방정부, 사회파트너,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 JTM은 화석연료 및 탄소 집약적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전환 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한 지역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술 지원 및 자문 제공
- JTM 및 JTM에 참여하려면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과 제출 필수적인 요소
- 화석연료 관련 산업의 단계적 폐쇄 혹은 탄소 집약적 공정과 제품의 탈탄소화에 의한 사회·경제·환경적 과제 포함, 2030년 까지 전환 과정의 방향과 목표, 내용, 거버넌스, 로드맵
- 단순 재정 지원과 융자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닌 JTM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
- 기존 석탄지역 전환 플랫폼의 확대 개편 통해 운영

WHERE WILL THE MONEY COME FROM?



## 주요국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

2. 해외 정의로운 전환 정책 동향

영국

- 영국 정부는 2020년 11월 코로나19 대응 '녹색 산업혁명을 위한 10대 계획' 수립
- 2030년까지 고속권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녹색일자리 2백만 개 창출을 위한 '녹색일자리TF' 출범
- TF에는 전환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노동조합, 교육기관, 기술전문가, 연구자들이 참여, 에너지·산업전략부(BEIS)와 교육부가 사무국 담당
- 녹색전환에 필요한 기술, 2050 넷제로 달성에 필요한 기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녹색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 보장 방안,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탄소 노동자 지원방안 논의, 2021년 7월에 결과보고서 제출
- 녹색일자리TF는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도록 기후변화 정책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포용적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
- 하지만 TF가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돼 영국 내 노동조합들은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Just Transition Commission)' 등 지속 가능한 사회적 대화 기구 설립 요구
- 스코틀랜드는 2019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 3월 정의로운 전환 전략 발표, 직업역량개발스코틀랜드(Skills Development Scotland)가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독일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기구인 '성장·구조변화·고용위원회(이하 탈석탄위원회)' 발족
- 탈석탄위원회는 4명(전 연방수상청 대표, 에너지환경경제학자, 전직 장관 2명)이 공동위원장, 에너지 부문, 갈탄 광산지역, 산업계, 환경단체, 노동조합, 과학계와 연방정부 구성 정당 대표들 등 총 31명 구성
- 10회에 걸친 전원회의 끝에 2019년 1월 최종보고서 채택, 2월 연방정부에 제출
- 2020년 7월 3단계에 걸쳐 무연탄과 갈탄 발전설비 규모를 줄이고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 완전 폐쇄하는 **탈석탄 법안** 통과, 탈석탄법은 독일 정부가 탈석탄위원회 권고에 따라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폐지 계획을 수립하고, 탈석탄을 위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산업정책의 이행체계를 수립하는 내용 포함
- 독일의 탈석탄 정책은 '정의로운 전환' 강조, 연방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쇄 결정 시기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매방식 도입, 석탄발전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조기 폐쇄에 동참하도록 유도
- 탈석탄위원회는 해당 부문의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고, 해고 방지, 재교육 기회 확대,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 방안 등을 포함한 노동전환 정책 권고
- 연방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실직한 노동자들을 위해 **최소 58세까지 최장 5년 동안 약 50억 유로의 고용조정 지원금 지원, 실업 상황으로 인한 소득 감축 보전, 조기 은퇴에 따른 연금 축소분 보상 방침**
- 노동조합은 정의로운 전환 정책 설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급속노조가 발간한 '전환지도 (Transformation Atlas)' 보고서는 정의로운 전환 준비를 위한 모범 사례, 독일 건설노조는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단체협약 내용에 시멘트 산업 내 직업훈련 과정에 기후변화, 자연보존과 같은 내용 포함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탈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간 사회적 파트너십과 대화를 촉진하는 기제로 활용

주요국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		2. 해외 정의로운 전환 정책 동향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사회와 정부 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로 평가</li> <li>2018년 사회주의 정부와 노동조합들 사이에 이뤄진 <b>석탄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협상</b>이 대표적인 예</li> <li>정부는 석탄광산 노조 및 회사와 <b>2030년까지 이 지역의 비즈니스 및 개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를 위한 조기퇴직, 해고 및 기타 사회적 조치와 2억 5,000만 유로를 약속하는 역사적 합의 도달</b></li> <li><b>정의로운 전환 담당 부처</b> 설치, 2020년 수립된 <b>'정의로운 전환 전략'</b>, 주요 이행 메커니즘은 <b>'정의로운 전환 협정'</b>으로 구성,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노동조합은 협상을 통해 협정에 서명</li> <li><b>'정의로운 전환 기구'</b>가 이들 협정 체결을 지원, 협정을 보완하기 위한 긴급 실행계획 수립</li> <li>EU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에 의해 7억 9,100만 유로 자금 배정 받음, 석탄발전소 해체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 할당될 예정</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b>'석탄 및 화력발전소 지역과 경제 활성화 범정부 작업반'</b>의 신설 포함한 행정명령 서명</li> <li>법정부 작업반은 석탄, 석유, 가스, 발전소 소재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380억 달러 규모의 가용 자원을 발굴하고 이들 지역의 기반시설,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투자 권고</li> <li>에너지부(DOE)는 이를 반영해 이들 지역의 차세대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1억 950만 달러 투자 방안 제시, 인프라 및 일자리 법안에도 정의로운 전환 투자 포함</li> </ul>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년 캐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하는 목표 제시, 2016년 전국 청정대기 및 청정발전을 향한 변화 선포,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략 방향과 실행방안 모색</li> <li>2018년 12월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 단계적 중단, 전력의 90%를 청정에너지로 생산하는 계획 발표</li> <li>캐나다 석탄협회는 2030년까지 석탄부문 일자리 4만2천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li> <li>2019년 캐나다 총리는 일자리 축소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b>'정의로운 전환법'</b> 입안 계획 발표</li> <li>아직 입안 절차는 미진행, <b>석탄사업 노동자, 정부, 지역사회의 삼자 협의체 운영</b>은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사례</li> <li>2018년에 <b>'캐나다 석탄발전 노동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태스크포스'</b> 출범, 태스크포스팀은 피해지역 방문, 이해관계자 면담, 시민 공청회 개최 등을 토대로 최종보고서 제출, 활동 종료</li> <li>보고서에는 석탄산업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 계획, 모니터링·평가 과정의 공개, 정의로운 전환 관련 입법 및 규제 조치, 정의로운 전환 센터 설립과 자금 지원, 비자발적 조기퇴직 노동자를 위한 연금 프로그램, 노동시장 정보공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지원 등 <b>10가지 권고안</b></li> <li>앨버타 주정부는 2017년 <b>'석탄 공동체 전환기금(CCTF)'</b>과 <b>'석탄 노동자 전환 프로그램(CWTP)'</b> 설치, 각각 500만, 4,000만 캐나다 달러 기금 조성 후 지원 중</li> </ul>	

###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법·제도 현황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7.) - 관계부처합동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법·제도 현황

**비전**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 탄소중립 경제성장실의 질 향상 동시 달성

**3+1 전략 추진**

3대 정책 방향	목적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기회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10대 과제	① 에너지 전환 가속화	① 신유망 산업 육성	① 취약 산업 계층 보호
	②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② 혁신 생태계 지원 구축	②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③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③ 순환경제 활성화	③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④ 도시·국토 저탄소화		

+

**탄소중립 재도약 기반강화**

■ 재정   ■ 녹색금융   ■ R&D   ■ 국제 협력

⇒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 탄소중립 분야 투자 확대 기반 구축

**추진 체계**

[조직] 2050 탄소중립위원회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운영] 사회적 합의 도출 +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 단계적 성과 확산

**❖ 취약 산업·계층 보호,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 (사업재편 촉진) 구조전환으로 축소되는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 등의 경우,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적극 지원
- (재취업 지원)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업종·공정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 강화
- (고용영향평가) 저탄소산업 전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평가, 고용친화적 전환 위한 정책 추진방향 마련

**❖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 (준비) 지자체 탄소중립 역량 강화 및 지원기반 구축
- (이행) 지역주도 탄소중립 추진 위한 기반 확립
- (달성) 탄소중립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이행점검 체계 구축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인식제고) 학교,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경로 등을 통해 전국민 대상 환경교육 및 홍보 강화
- (참여촉진) 시민사회, 산업계, 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행동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 정착
- (소통강화) 탄소중립 추진 전과정에서 양방향 소통 강화, 정책 고객별 맞춤형 소통 추진

##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2020.12.7.) - 관계부처합동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법·제도 현황

**목표**

- '30년까지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
- 매출 1조원 글로벌 부품기업 육성 (20년 13개 → '30년 20개)
- 1,000만불 수출 부품기업 250개 육성 (20년 156개 → '30년 250개)

**전략**

- 연대·협력을 통한 미래차전환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 고성장·고부가가치·신시장 등 비즈니스 모델 혁신 지원
- 미래차 전환과 관련한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수단 확충

**정책 과제**

미래차전환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역별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플랫폼 구축</li> <li>미래차 전환 기획역량 강화 지원</li> <li>연대·협력과 이업종 융합 촉진</li> </ul>
사업모델 혁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성차사 전략과 연계하여 고성장분야 진출</li> <li>GVC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전략품목 육성</li> <li>미래차분야 신사업 개척 지원</li> <li>글로벌 완성차사, New Player 등 신시장 개척</li> <li>연관산업 생태계의 미래차 대응역량 강화</li> </ul>
사업재편 지원수단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 선도·후발기업 등 유형별 R&amp;D 지원</li> <li>(인력) 융합형 선도인력 양성, 재직자 전환 교육</li> <li>(자금) 금융·보조금 등 투자인센티브 확충</li> <li>(공정) 스마트공장, 디지털트윈</li> </ul>

**1. 미래차전환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 권역별 지원 플랫폼(안) 】

주요 분야	동남권	전라권	대경권	충청권	경가·강원권
수소차·전기차 핵심부품	전기차 부품, 친환경 상용차	전기차 부품, 친환경 상용차	자동차 부품, 차량용 소재	미래차 전장부품, 차량주행실용	안전부품, 수소형 전기차 부품
역할(예시)	(지자체) - 기술 선도기업 육성, 부품기업지원센터 운영 (TP) - 시범(중형)차량 개발 (자동차) - 수소전기차 R&D (기계부) - 전기동력부품R&D (경남은행) - 미래차전환 금융지원	(지자체) - 완성차-부품사 협력 강화 (자동차) - 부품 실용, 빅데이터 분석 (융합기술원) - 프릭, 빅스, 특장차 연구개발 지원 (국립과기원) - 기술지원, 인력 양성	(지자체) - 자동차 부품 실용 연구개발 (기능성소재개발지원센터) - 자동차 부품 경쟁력 강화 (자동차) - 자동차 부품 경쟁력 강화, 인력 지원 (TP) - 차량/감속장치개발 (성능개발연구부) - 소재기술 개발	(지자체) - 실용평가 인력연구개발 (TP) - 전장·의정부품개발 (자동차) - 자동차 부품 경쟁력 강화, 인력 지원 (자동차) - 부품 실용 R&D	(지자체) - 수소형 전기차 기업지원센터 구축 (자동차) - 스마트제조공정기술 개발, 교육 등 (산업기술시험원 등) - 부품 안전성 실용 평가, 인증시험

**2. 후부품 산업의 사업모델 혁신 지원**

분야	개발 방향
전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우치·바인더·분리막 등 배터리 핵심소재(21년 115억원)</li> <li>구동모터 영구자석(21년 17억원)</li> </ul>
수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저장용기 5대 핵심소재(21년 144억원)</li> <li>수소상용차용 400kW급 대용량 모터 국산화(21년 53억원)</li> </ul>

**3. 미래차 전환 4대 지원수단 확충**

프로그램	주요내용
미래차그린뉴딜펀드 (21- 2천억원)	완성차사 출연금(300억원)을 기반으로 미래차 R&D, 설비투자,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재편지원펀드 (21, 500억원)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M&A·설비투자·경영구조 개선·지재권 확보 등 지원
미래차펀드 (21, 2천억원)	스마트대한미국펀드(6조원) 내 미래차 펀드를 조성, 미래차 분야 중소벤처기업 투자 지원
Big3펀드 (20, 1.5천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전환자금 (21, 1.6천억원)	사업전환·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시범, 운전 자금 지원 (5년 거치 10년 이내)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2021.7.22.) - 관계부처합동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법·제도 현황

**정책방향: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노동자·지역 피해 최소화**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정부 정책지원 보강

신산업 분야 혁신성장 육성·지원 전문인력 양성·공급	기존산업(고탄소·노동집약)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 지역·유망·대체산업 육성	국가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공정한 전환 실현
------------------------------------	--	------------------------------------

**추진전략: 노동전환의 시급성·규모에 따라 전략적 대응 +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저탄소화**

-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노동전환 수요가 크고 단기간에 발생 → 신속 지원  
→ (기업) 사업재편·전환 지원 + (근로자) 직무전환, 전직·재취업 지원 + (지역) 대체산업 육성, 위기지역 신속 지정
- [철강·정유·시멘트 등] 탄소중립 영향 가시화 / 노동전환 수요 중장기적 발생  
→ 산업·지역별 일자리 모니터링 + 구조전환 가속화로 일자리 감소 전망시 노동전환 지원체계 가동

**디지털화**

- (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친화적 디지털화 지원
- (근로자)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평생직업능력 향상 지원, 고용안정망 강화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중·장기단위 거버넌스 및 지역단위 전달체계 구축
- 법률 제정
- 사회적 대화

	AS-IS: 사후적·개별적 대응	TO-BE: 선제적·종합적 대응
기업	사업전환 정보 및 인센티브 부족	사전적 사업전환 수요발굴 → 전략적 컨설팅 + 인센티브 강화
근로자	준비없는 실직, 개인이 고용불안 감당	직무전환·재매치·사전적 이·전직 준비, 국가-기업-근로자가 공동부담·완화
지역	사후적으로 고용·산업 위기 대응	선제적 지역 대체산업 육성 지원
거버넌스 전달체계	병정부 종합적 지원체계 부재 사업전환·노동전환 분절적 지원	(중앙) 거버넌스 구축 → 범부처 협업 강화 (지역) 사업전환·노동전환 연계 전달체계 구축
법·제도	법률·예산·인프라 등 미흡	법·제도 정비 /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앙) 선제적 기업수요 발굴 및 컨설팅 지원
- (지역: 전달체계) 선제적 기업수요 발굴·통합 컨설팅 지원
- (법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 (인프라) 관련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노동전환 지원단 (단장: 기재부 1차관)**

선제적 기업 노동전환 지원단

- 사업구조개편 지원 분과 (기재부 차관보)
- 노동전환 지원 분과 (고용정책실장)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공정위 등, 고용부, 산업중기부, 기재과기정보부

**노동전환 분석센터**

- 산업·직종인력 전망: 소멸·상생·산업·직종별, 구인·수요·전망
- 산업별 직무분석: 산업별 직무 분석 및, 창출·소멸·직무·전망
- 지역·산업·모니터링: 위기 지역·산업·중심, 일자리·모니터링
- 전환·전직지원: 전환·전직·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산업 단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 개시('21.下~)
- (지역 단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심 상생·협력 대안 논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 및 구체화 지원
- (현장 갈등예방) 지방노동관서 중심 노사갈등 현황 모니터링 및 갈등관리 → 필요한 지원금 지원 연계

14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2021.7.22.) - 관계부처합동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법·제도 현황

**1. 전략적 수요발굴·관리 체계 구축**

- 제도별 수요발굴·관리 체계를 통합해 범부처 전략적 수요발굴·체계(사업구조개편 파트너십·지원 전달·협의기관 등) 구축

**3. 시장 친화적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촉진**

- 사업구조 개편 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금융공급 확대 및 M&A 활성화, 금융지원 기반 확충 등 개편 추진

**2.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제도 실효성 강화**

- 탄소중립 등 지원근거 마련, 규제특례 확대 등 제도개선 및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등 실효성 강화

**4.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인프라 확충**

- 실물·금융 연계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및 실태조사·DB·사후관리 등 인프라 확충

**수요발굴단계**

유형별	디지털화, 탄소중립
업종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LCD 등
규모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요관리단계**

- 수요발굴 기업대상 정보제공 및 안내
- 기관간 정보공유
- 기업 사전 진단·선별

**지원단계**

사업구조개편	재정		세제	규제 완화	금융		인력
	R&D	컨설팅	대출	펀드	1단계	2단계	
사업재편	○	○	○	○	○	○	○
사업전환	△	○	△	△	○	△	○
시장활용	X	○	X	X	○	△	X

**추진체계**

- 민관 합동 사업구조개편 파트너십: 사업재편·전환 전달기관, 업종별 집단체, 금융기관, VC, PFI 및 지자체 등 참여
- 지원 전달기관(대한상의): 사업구조개편 지원 협의기관 운영(제도별 전문기관, 정책금융협의체 대표기관 및 TCB 등 참여)
- 전달체계: 제도별 전문기관(대한상의, KIAT, 중진공) 활용, 인력전환 지원까지 통합적 관리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① 제도 설계(가이드라인 및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등) ② 관리(수요발굴 및 지원실적 관리,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 1) 사업재편펀드 및 모태펀드 활용 / 2)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전용 펀드 조성 / △: 지원대상이 제한

15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2021.7.23.) - 관계부처합동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법·제도 현황

**목 표**  
 중소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

**전략** 성장경제, 경영약화, 폐업·재기 등 상황별 지원체계 정비

3대 전략 및 10개 핵심과제

**11 [성장경제] 경쟁력 재고를 위한 신사업 진출 및 혁신 촉진**

- 1 신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전환제도 개편 추진
- 2 사업전환 지원 프로그램 확충
- 3 홍보 및 정책 연계를 통한 전략적 수요 발굴
- 4 신사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전환법 개편 추진

**1. [성장경제] 신사업 진출 및 혁신 촉진**

- 1) 신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전환제도 개편 추진
  - (1) 사업전환 적용범위 및 기간 확대
  - (2) 사업전환 지원체계 정비
- 2) 사업전환 지원 프로그램 확충
  - (1) "신사업 진출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 도입('22년)
  - (2) 사업전환 단계별 지원 강화
  - (3)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프로그램 강화
  - (4) 사업전환에 따른 유류설비 거래 지원('22년)
  -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신사업 진출 활성화('22년)
  - (6) 부처별 정책과 협업 강화
- 3) 홍보 및 정책 연계를 통한 전략적 수요 발굴
  - (1)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및 채널 확대('22년)
  - (2) 기업진단(K-Doctor) 활용, 선제적 수요 발굴('22년)
  - (3) 지역 주력산업 연계 신사업 진출 지원('22. 확대)
- 4) 신사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전환법' 개편 추진

〈사업전환법 개편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편
지원범위	· 업종전환 : 100%전환 · 업종추가 : 매출액의 30% 전환	· 일반 사업전환(업종전환, 업종추가) · 신사업 진출(이해유형 상용목 전환, 사업모델 혁신 등)
지원체계	· 정책결정기구 : 없음 · 지원항구 : 사업전환지원센터	· 정책결정기구 : (신설) 중소기업 사업전환 심의회 · 지원항구 : (개편) 사업전환지원센터 (상당기능 강화)
주요목적	· 주식교환, 합병, 영업양수 등	· (확대) 지원범위 확대에 맞춘 특례 전면 재정비
지원사업	· 정책자금, 컨설팅, 인력 등	· (신설) 이합동 공동 사업전환 등 신규 사업 도입 등
선도기업 육성	· 선도기업 육성 : 없음	· (신설) 사업전환 선도기업 선정 및 패키지 지원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2021.7.23.) - 관계부처합동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법·제도 현황

**2. [경영약화] 경영 안정화 및 부실 前 선제적 대응**

- 1) 위기 단계별 구조개선 및 사업정리 지원
  - (1)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
  - (2) 회생가능 기업에 대한 신속한 회생 지원
  - (3)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사업정리 지원
- 2) 데이터 기반 선제적 정책대응 시스템 구축
  - (1) 중진공 진단체계 'K-Doctor' 체계로 개편('21. 하 시범추진)
  - (2) 중소기업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 연계

**3. [폐업·재기]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

- 1)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현장의 의견 반영 전면 개편('22년)
- 2) 재도전을 위한 안전망 확보 및 재기 걸림돌 제거
  - (1) 실패 이후 생활 안전망 확보 지원
  - (2) 부실채무 정리 등을 통한 재기 걸림돌 제거('22년)
- 3) 재창업 활성화 및 성장 지원
  - (1) 재창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한 역량 제고
  - (2) 재창업 사업화 지원 강화
  - (3) 정부 및 민간 협업을 통한 재창업 지원
  - (4) 재창업 기업의 Scale-up 촉진
- 4) 재도전 인식 개선 및 지원 기반 강화
  - (1)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2) 재도전 지원 기반 강화

중소기업의 턴어라운드 시작됩니다

01 | 신사업 진출의 경영역이 더욱 강화됩니다



02 | 중소기업의 위기대응을 함께 합니다



03 | 중소기업의 재도전에 지원합니다



매출액과 일자리도 증가합니다



1. 신사업진출 선도기업 552건 100개사 육성
2. 신사업 진출 및 재도전지원으로 매출액 1조 2,579억원 증가('21~'25)
3. 신사업 진출 및 재도전지원으로 7,345명 일자리 창출('21~'25)

###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2021.12.10.) - 관계부처합동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법·제도 현황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 (제조업 르네상스 2차)

구분	18년	50년(Net-zero)
① 전환장고부가 총액 비중	16.5%	84.1%
② 탄소집약도(탄소배출/부가가치)	496톤CO <sub>2</sub> /십억원	68톤CO <sub>2</sub> /십억원 (△86%)
③ 대한민국 수출 순위	6위(20년 7위)	4강 안착

#### 추진방향과 전략

- ① 탄소중립을 기회로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
- ②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총력지원으로 산업계의 부담은 최소화
- ③ 탄소중립에 따른 소외계층 없이 모두 도약하는 대전환 실현

####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 ◇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 확보
- ◇ 기업부터 공장 전폭적 정부지원
- ◇ 저탄소 시대 맞춤 제도 구축

#### 탄소중립 확산 생태계 구축

- ◇ 안정적 에너지 기반 확보
- ◇ 탄소기저 반영 시장 창출
- ◇ 빈틈없는 탄소중립 공급망 관리

####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 ◇ 3대 분야 중 성장동력과 추진
  - 저탄소 소부장 : 바이오·이차전지 등
  - 그린 플랫폼 : 친환경공정 EPC 등
  - 친환경 인프라 : 수소모빌리티 등

#### 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 ◇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저탄소 혁신
- ◇ 전통산업·인력 신재직 미래전환
- ◇ 지역경제 녹색 균형발전 추진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 ◇ 산업계 수요 기반 유연한 정책모형 체계(Agile System) 구축
- ◇ 산업 대전환의 플랫폼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 ❖ 중소·중견기업의 저탄소 공정전환 촉진

- (가칭)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 중심 기술 보급, 녹색경영
- ✓ 청정생산지원센터 기능 확대→기업 지원 'single window' 활용
- 전문가 진단 기반 기업맞춤형 친환경 생산설비 보급
- ✓ 클린팩토리 구축 목표(누적): ('21년)427개→('25년)1,800개
- 넷제로 유망기업의 공정·시설 전환 용자 확대(22년 1,200억원)

#### ❖ 중소·중견 기업인의 자발적 탄소중립 경영 혁신 강력 지원

- ESG경영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중소·중견 특화 가이드라인 마련
- ✓ 중소·중견기업 '자가진단 툴' 마련 병행→컨설팅 등 연계 활용도 제고
- 저탄소 경영전환 종합 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 확대
- ✓ 컨설팅('22년 100개소), 바우처(고탄소 매출업종 제조 소기업 대상, 기업당 5천만원)

####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인식제고) 학교,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경로 등을 통해 전국민 대상 환경교육 및 홍보 강화
- (참여촉진) 시민사회, 산업계, 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행동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 정착
- (소통강화) 탄소중립 추진 전과정에서 양방향 소통 강화, 정책 고객별 맞춤형 소통 추진

###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2021.12.28.) - 산업통상자원부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법·제도 현황

#### 기본 방향

- 전력수급 안정을 확보하면서 석탄발전의 정정<sup>e</sup>로의 전환 촉진
- 사업자, 협력사, 지역,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여 전환 추진
- 법·제도, 소통·협의 체계 마련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발전산업 변화 전망과 정책방향】

구분	현재	전환기	미래	정책방향
발전산업 전환	석탄발전	LNG발전	수소발전	전환 가속화
		암모니아발전		
		신재생, CCUS, ESS		
부지 활용 (지역 경제)	석탄발전소	LNG발전소	수소·암모니아, 신재생 발전소	사업자-지자체-지역주민 협의 촉진
		자연복원, 문화·관광시설		
주요 일자리 변화	석탄발전설비 운전, 정비	LNG발전설비 운전, 정비	수소·암모니아 생산도입·저장설비 운전, 정비 문화관광시설 운영	전환교육 및 구조조정
법·제도	에너지 전환 지원법 제정 : 석탄발전 조기 폐지·전환 및 비용보전 근거 마련 전기사업법 개정 : 석탄발전 상한제 근거 마련 에너지법 개정 : 지역 협의 기구 설치 근거 마련			

#### ❖ 석탄발전 일자리도 친환경 발전 일자리로 전환

- LNG·수소·암모니아 등 저탄소·무탄소 대체 발전소 및 신재생E 확대로 성장이 예상되는 송·배전 공사·정비 분야 등으로 최대한 재배치
- 친환경 발전으로의 전환에 따른 신규 발생 일자리 전망, 교육·자격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TF 운영
- 재배치·신생 업무 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 노동자 불안 완화를 위한 상황공유 및 지역기반 대응체계 구축

- 석탄발전 폐지 예정시점 기준 최소 1년 전부터 지자체·고용지청·발전사·협력사간 전환TF 구성, 폐지 준비 상황 및 계획 공유
- ✓ 타지역으로 재배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 소규모 협력사는 지자체·고용지청 중심으로 지역 기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 불가피하게 전환이 곤란한 일자리는 점진적 감축

- 석탄발전에만 필요한 특수직종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신규 채용 최소화, 정년에 의한 점진적 감축 유도

###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2021.12.) - 중소기업부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법·제도 현황

<b>비전</b>	<b>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소기업 저탄소화 및 그린분야 혁신성장동력 창출</b>		
<b>전략</b>	<b>중소기업 유형별 맞춤형 저탄소화 지원 확산 및 그린 혁신 생태계 조성</b>		
<b>정책방향</b>	【 <b>감축</b> 】	【 <b>육성</b> 】	【 <b>확산</b> 】
<b>세부과제</b>	①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①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② 저탄소 경영전환 패키지 지원 ③ 공정혁신을 통한 효율화·저탄소화 ④ 저탄소 신산업 사업전환 지원	②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① 그린경제 선도 유망기업 발굴 ② 탄소중립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③ 중소기업 특화 그린기술 R&D 지원 ④ 규제특구를 통한 그린기술 상용화 ⑤ 그린스타트업 타운 등 친환경 창업 거점 조성	③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경영 확산 촉진 ①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경영 확산 촉진 ② 중소기업 경영의 지역 확산 거점 구축 ③ 녹색금융을 통한 탄소중립 경영전환 뒷받침 ④ 교육·정보를 통한 탄소중립 인식 개선 및 확산
<b>거버넌스</b>	④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거버넌스 구축 ① 중기 탄소중립 지원 특별법 제정 ② 중기 탄소중립 통계정보체계 마련 ③ 민간·지역 중심 추진체계 구축		

#### 1. 정책목표

- 22년 탄소중립 예산 4,744억원 투입, 약 2,500개 중소기업 지원 예정, 지원대상 매년 10%씩 확대 추진
- 30년까지 중소기업 고탄소 10개 업종 6.7만개 중소기업의 약 50%인 3.4만개 기업의 저탄소화 지원 추진
- 그린분야 혁신생태계 조성 통해 '25년까지 그린유니콘 1개,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10개 등 발굴·육성 추진

#### 2. 전략 및 정책방향

- [감축]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고탄소 업종은 공정혁신, 에너지효율화 등을 통해 자발적 탄소 감축을 촉진, 저탄소 업종으로의 사업전환 병행 지원
- [육성]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탄소중립을 이끌어갈 유망 그린기업 발굴, 동 기업들이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R&D 지원 및 혁신 생태계 조성
- [확산]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경영 확산·촉진**  
정책 패키지 전환, 지역거점 구축 등 통해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 확산, 소외되는 기업 없도록 금융·보증 지원체계
- [거버넌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거버넌스 구축**  
중소 탄소중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및 민간·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추진체계 등 구축

###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2022.10.26.) - 관계부처합동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법·제도 현황

<b>비전</b>	<b>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b>			
<b>3대 정책방향</b>	① <b>책임있는 실천</b> : 과학과 합리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 ② <b>질서있는 전환</b> : 법과 절차의 준수, 조당적 협력과 사회적 합의 중시 ③ <b>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b> : 혁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및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b>4대 전략·12대 과제</b>	<b>가. 구조적·요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 있는 탄소중립</b> 1. 원전·신재생·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2. 저탄소 산업구조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 3. 국토의 저탄소화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b>나.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b> 4.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개선을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 5.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 및 신시장 창출 6.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금융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투자 확대	<b>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b> 7. 에너지 소비절감과 탄소중립 국민실천 8.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9. 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b>라.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b> 10. 적응주체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기후위기 적응 기반 구축 11.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 선도 12. 모든 과정의 전 과정 상시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b>이행 기반</b>	○ 2030 NDC 이행도매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3월)			

#### 1. (조기경보) 산업·일자리 전환 조기 경보체계 구축

- 노동전환 분석센터(한국고용정보원)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협업을 통해 입체적인 방식으로 산업·일자리 전환 정책대상 포착
-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 최소화 위해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

#### 2. (근로자지원) 위기업종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노동전환

- 위기업종·지역의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직무 훈련프로그램 제공, 소요비용 지원 및 훈련인프라 확대
- 위기산업 노사상생 협약 지원, 중소·영세 사업장 대상 산업·노동 전환 컨설팅 등 고용안정 지원
- 고용상태 영향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업구조, 고용상태, 직무특성 등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영향에 따른 체계적인 근로자 지원방안
- '산업전환시 고용안정지원법률' 제정 지원

#### 3. (기업지원) 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및 피해 최소화 지원

- 전국 구조혁신지원센터(10개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 체계적 사업전환 지원
- 가)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기존 청정생산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관련 기술 보급, 녹색경영 촉진
-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기업을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 노력
-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기업의 자산가치 하락 또는 사업의 조기 전환 등에 따른 손실 최소화를 위한 지원
- 기후창업·기후벤처 분야 혁신 기업에 대한 R&D, 사업화, 실증·상용화 규제개선 등 지원

#### 4. (지역지원) 지역 단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범부처 지원방안 마련·추진
- 현대차 울산공장,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중심으로 원·하청 공급망 형성하고 있는 부·울·경 전환지도 구축 통해 지역 특화 지원방안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2.3.25.) - 시행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법·제도 현황

탄소중립 기본법의 정의로운 전환

제2조(정의)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적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총괄	(비전) 2050 탄소중립 + 환경경제 조화			
	(전략·목표)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분야별 시책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영향평가</li> <li>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li> <li>배출권 목표관리</li> <li>탄소중립 도시</li> <li>지역 에너지 전환</li> <li>녹색건축 고품질</li> <li>흡수원 CCUS</li> <li>국제 감축사업</li> <li>중합정보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 예측</li> <li>기후위기 적응대책 (국가, 지방, 공공기관)</li> <li>지역 기후위기대응</li> <li>물 관리</li> <li>녹색국토</li> <li>농림수산 전환</li> <li>적용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안전망</li> <li>특별지구</li> <li>사업전환</li> <li>자산손실 최소화</li> <li>국민참여</li> <li>협동조합 활성화</li> <li>지원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색경제</li> <li>녹색산업</li> <li>녹색경영</li> <li>녹색기술</li> <li>조세제도</li> <li>녹색금융</li> <li>정보통신</li> <li>순환경제</li> </ul>
기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기후대응 기금			

22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2.3.25.) - 시행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법·제도 현황

시책	주요 내용	주관부처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상태 영향조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산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li> <li>(지원 내용) ①취업 및 구직활동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실업자에 대한 생계 지원</li> </ul>	고용노동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①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탄소중립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역(전체 지정기간 5년 초과 불가)</li> <li>(지원 내용) ①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②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③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④고용 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li> </ul>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사업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①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②녹색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li> <li>(지원 내용) ①사업전환에 관한 정보제공, ②사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③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융자 등의 지원</li> </ul>	중소벤처기업부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톤 이상인 기업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li> <li>(지원 내용) ①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②전환 대상 사업의 연구·개발 지원, ③사업전환 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li> </ul>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 내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li> </ul>	-
협동조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 내용)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li> </ul>	기획재정부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①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한국고용정보원, ③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 가능</li> <li>(지자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 가능</li> </ul>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후대응 기금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교통·에너지·환경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금 등으로 조성</li> <li>(기금 용도)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li> <li>(지자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 가능</li> </ul>	기획재정부

23

정의로운 전환 관련 기존 법률 개정 및 신규 법안 현황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법·제도 현황
구분	법률	목적 및 내용	계획 및 정책
산업 전환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1.1.27.강훈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의 탈탄소경영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 구현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기본계획 수립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2021.8.17.제정)	탄소중립 구조전환기의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 지역주도의 선제적인 예방조치 및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 기존 '국가균형발전법'내 산업 위기지역의 지정근거를 '지역산업위기대응법'으로 이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2021.10.19.일부개정)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 활성화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2021.9.10.정태호의원 대표발의, 2023.2.23. 수정가결)	디지털 전환·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	사업재편 지원 대상 확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021.10.12.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 촉진 및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	사업전환의 승인 및 지원 범위 확대
노동 전환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1.9.14.이수진의원 대표발의)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의 근로자들의 노동전환 지원 근거 마련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 수립, 노동전환분석센터 설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2021.12.23.강은미의원 대표발의)	탄소중립·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정책 수립,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원칙 마련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 수립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022.6.21.임이지의원 대표발의)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에너지 전환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0.10.13.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에너지전환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발전사업자 및 관련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 등 규정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원, 에너지전환 기금 설치
	농어촌·농어업 에너지전환 특별법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1.12.)	농어촌·농어업 분야의 공익기능 유지, 에너지전환 및 자립의 공공적·계획적 추진, 재생에너지의 생산·소비 활성화 조치 등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	농어촌 에너지전환 종합계획 수립, 농어촌에너지전환기금 설치

노동전환 관련 신규 법안 비교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법·제도 현황
구분	노동전환 지원법	정의로운일자리전환 지원법	고용안정 지원법
배경	탄소중립이행, 산업디지털전환	탄소중립 정책, 디지털 기술변화	탄소중립이행, 산업디지털전환
핵심 개념	노동전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양질의 일자리, 민주적 의사결정(공동결정)	산업전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
기본 원칙	근로자, 기업, 지역 보호 및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환경·산업·고용 등 정책 통합, 사회적 대화 추진	(탄소중립기본법)기후정의에 따른 참여 보장, 피해와 손실 전가 금지, 노동조합법 개선, 사회보장제도 개선	근로자, 기업, 지역 보호와 취약계층 고용불안 및 피해 최소화, 환경·산업·고용 등 정책 통합, 사회적 대화 추진
계획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고용노동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 수립(정부)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고용노동부)
심의 의결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위원회, 산업·업종·지역별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위원회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지원 체계	노동전환분석센터(한국고용정보원), 노동전환지원센터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	지원 업무 전담 기관 설치 및 지정
지원 사업	인력수요 전망 및 분석, 노동전환 지원, 근로자단체 지원,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 지자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원	-	고용영향 사전평가(한국고용정보원)
작업장내 민주주의	-	민주적 의사결정, 정보 제공, 민주적 의사결정 협약 체결, 기업별 민주적 의사결정 협약 체결, 사업주 지원, 분쟁 해결	-
재원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기후대응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기후대응기금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기후대응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4.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현황 분석

### 탄소중립에 따른 부문별 일자리 전망

4.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현황 분석

#### 일자리 전망

- 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 자동차는 기 확정된 사업축소·전환 목표에 따라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 발생
  - ✓ (석탄화력발전)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 폐지(28기 LNG 전환)
  - ✓ (자동차)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 '20년 2.5% → '25년 18.3% → '30년 33.3%
- 철강·시멘트·정유 등은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 및 공정개선 기간 등 고려 시, 중·장기적 노동전환 수요 발생 전망

구분	신산업 부문	제조 부문	발전·수송 부문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에너지(태양광·해상풍력 등)</li> <li>▪ 차세대 전력망(송배전망 확충 등)</li> <li>▪ 저탄소 신산업(이차전지·저전력반도체·바이오·그린수소 등)</li> <li>▪ 기후산업(CCUS·그린서비스·벤처 등)</li> <li>▪ 순환경제(재생원료, 재제조 산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강</li> <li>▪ 석유화학</li> <li>▪ 시멘트</li> <li>▪ 정유</li> <li>▪ 반도체·디스플레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연기관 자동차</li> <li>▪ 석탄화력발전</li> </ul>
전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재정 및 민간투자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공정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축소 및 타 산업으로의 전환</li> </ul>
일자리 전망	신규일자리 창출 전망	단기적 사업축소 및 노동전환 수요 제한적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 가시화

자료: 관계부처합동(2021.7.2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영향

4.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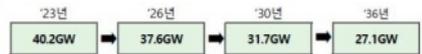
### 탈석탄에 따른 고용불안

- 석탄발전소 폐쇄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규모는 대략 5만명 이상
- 2021년 산업부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부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 폐쇄시 총 7,935개의 일자리 상실(정규직 2,625명, 비정규직 5,310명) 전망
- ✓ LNG발전소를 대체 건설하더라도 필요 인력이 3,024명에 불과해 4,911명은 전환 채용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발전소 직접 근로자 외에도 지역(충남, 경남, 인천, 전남)의 상권 근로자(연관 소상공인) 및 발전소 연관 업체 근로자 등에서 나타나는 감소 인원은 총 15,515명으로 추산

<석탄발전소 폐쇄에 영향 받는 인력 규모>

구분	인력규모(명)	기업분류	특징
발전운영	12,090	발전공기업5사	발전사 정규직은 발전기·터빈·보일러 같은 메인설비의 운전 업무 및 협력업체와 자회사가 담당하는 업무의 관리감독도 맡고 있음 순환근무로 인해 근무지역 변경가능
연료환경	2,283	민간기업	한전KPS나 한전산업개발은 전국에 사업장이 있어 규모가 크고 특허와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이 높으나, 지역기반의 업체들은 영세함 발전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용 불안정성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
경상정비	5,310	공기업(45%) 민간기업(55%)	석탄취급 부문 연료환경은 LNG로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위기감 높음 경상정비 부분은 LNG발전소에도 유사기술이 활용되므로 일자리 상실 우려 상대적으로 적음, 단 영세업체 및 2차협력사는 지역고착성으로 위기감 높음
자회사	2,623	발전공기업 자회사	자회사 근로자는 청소, 시설관리, 경비, 소방방재, 홍보관운영 업무담당 자회사 특성상 고용 불안정은 협력업체에 비해 낮은 편임, 단 경비, 소방·방재 업무는 일부 호기가 폐쇄되어도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으나 청소 업무는 사라질 수 있는 등 업무에 따라 영향이 상이함 정소업무는 지역고착성 높은 중년 이상 여성 특성상 타지역 전환배치 불가
플랜트	30,000	민간기업	정기적 계획에방정비공사에 단기간 근로자로 투입 석탄발전 폐쇄시 일자리 감소 우려 높으나 통계의 어려움 LNG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대체 일자리 생성 가능성
합계	52,306	-	-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



- '22 ~ '24년 : 강동안인 1-2, 삼척화력 1-2 준공(4.2GW)
  - '25 ~ '30년 : 당진1-4, 보령5-6, 삼천포3-6, 태안1-4, 하동1-4 등 노후 20기(9.9GW) 폐지 후 LNG 연료전환
  - '31 ~ '36년 : 하동5-6, 태안5-6, 영흥1-2 등 노후 8기(4.6GW) 폐지 후 LNG 연료전환
- \* 9차 전기기본 대비 동해1-2, 당진5-6 노후 4기 추가 폐지(1.4GW)

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22.11.22.), 산업전환 시 고용노동 지원법안 입법공청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3.1.13.),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영향

4.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현황 분석

### 기존 석탄발전 폐쇄 후 인력 재배치 현황

- 정부는 기폐지 석탄발전 8기 인력 중 95%(1,268명 중 1,207명)는 재배치됐다고 발표(산업부, 2021.12.28.)
- 2020년 진행된 보령 1-2호기 폐쇄 및 재배치 과정을 보면, 원청사에 비해 협력사의 피해가 더 크고, 하청 단계가 늘어날수록(1차 하청보다 2차 하청이) 피해가 더 크며, 직무 성격에 따른 재배치 가능성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남
- ✓ 원청인 발전사는 협력사에 재배치 및 협력사 우선 채용 요청 공문을 1회 발송하는 수준에서 대응
- ✓ 동일한 운전파트에서도 제어실과 달리 현장직 업무(낙탄 업무 등)는 기술력 차이로 재교육을 진행하기 어렵거나 진행된 경우도 재취업 기회를 얻기 곤란
- ✓ 재배치로 인해 설비 인력 기준보다 상회해 채용, 이후 추가 폐쇄 시 흡수 여력 전무
- 반면 시행됐던 고용안정 프로그램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임
- ✓ 보령 1-2호기 폐쇄시 <OO자동차대학>이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수행, 교육프로그램 담당자 중 발전 관련 전문가는 부재, 그 결과 이 프로그램은 전체 20여명 수준에서 수료 뒤 종료
- 지역 이동에 따른 이주대책 전무, 발전소 폐쇄 직전에 일정이 확정 통보되며 관련 대책을 수립할 수 없어 재배치에 따른 불안정한 이주를 감내하거나 계약해지 뒤 동일 지역내 열악한 일자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석탄발전소 폐쇄에 영향 받는 인력 규모>

사업소	발전사		협력사	
	기존	폐지후	기존	폐지후
서천 1,2	139명	전원 재배치	218명	197명 재배치 8명 정년 13명 감축
영동 1,2	213명	전원 재배치	158명	148명 재배치 10명 감축
보령 1,2	139명	전원 재배치	146명	124명 재배치 6명 정년 16명 감축
삼천포 1,2	110명	전원 재배치	145명	137명 재배치 8명 정년
합계	601명	전원 재배치	667명	606명 재배치 22명 정년 39명 감축

재배치 후				
他석탄, 잔류	신규 석탄	LNG 복합	원전	기타
788명	224명	102명	11명	82명
62%	18%	8%	1%	6%

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22.11.22.), 산업전환 시 고용노동 지원법안 입법공청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1.12.28.),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

## 자동차 부품 산업의 일자리 전망

4.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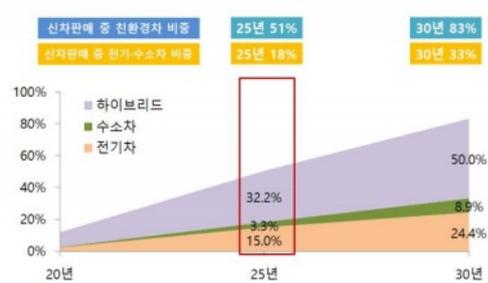
### 미래차 시장 전망

- **(세계시장)** 주요 완성차사의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선언 등으로 2030년 기준 **연간 신차 판매의 약 47.1%를 친환경차가 점유할 것으로 예상**
  - ✓ 글로벌 주요 완성차는 2045~2050년을 기점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선언 중
  - ✓ 예: 제네시스(2030년), 현대기아(유럽시장 2035년, 주요시장 2040년, 글로벌 2045년)
- **(국내시장)** 정부는 미래차 전환 및 육성전략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상향해 신차 판매 기준 **친환경차 판매비중을 2025년 51%, 2030년 83%로 설정**
  - ✓ 전기·수소차 비중은 2025년 18%(33만대), 2030년 33%(60만대)

<글로벌 차종별 판매량·점유율 전망>



<국내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



자료: 한국자동차연구원(2022.9.15.), 미래차 전환에 따른 국내 부품업계 및 고용 영향 전망

30

## 자동차 부품 산업의 일자리 전망

4.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현황 분석

### 미래차 전환에 따른 부품업계 변화

- **(부품변화)** 미래차 전환으로 엔진·배기·연료계 부품은 사라지고 동력전달부품도 상당수 감소해 전체적으로 **내연기관차 대비 50% 부품수 감소**, 반면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은 성장 예상
  - ✓ 차종별 부품수(만개): 내연기관 2.5~3, 하이브리드 3.2, 전기차 1.5, 수소차 2.3
- **(국내업계)** 국내 부품업체 전체에서 **미래차 전환으로 감소되는 부품군의 비중은 기업수 기준 43.4%, 고용인력 기준 44.1% 차지**
  - ✓ **감소군**(엔진,동력장치,전기장치): 기업수 4,429개(43.4%), 고용인력 10.8만명(44.1%)
  - ✓ **유지군**(조향,현가,제동,차체 등): 기업수 5,682개(55.6%), 고용인력 13.4만명(54.8%)
  - ✓ **확대군**(미래차부품): 기업수 104개(1.0%), 고용인력 0.3만명(1.1%)

### 자동차 정비업에 미치는 영향

- 전기차 전환시 엔진오일·변속기 등 내연기관 부품 중심의 정비수요도 대폭 감소, 정비업계의 존속 및 고용유지 등에도 영향
- ✓ **전기차 확산시 정비 수요가 3분의1로 감소 전망**

\* 정비업 현황('22.9월말 기준, 국토부 통계)

- 【사업체수(개소)】 ('12.12월) 35,244 → ('17.12월) 35,866 → ('22.9월) 36,268
- 【종사자수(명)】 ('12.12월) 99,106 → ('17.12월) 100,760 → ('22.9월) 92,977

자료: 한국자동차연구원(2022.9.15.), 미래차 전환에 따른 국내 부품업계 및 고용 영향 전망

<내연기관차 vs 전기차>



31

## 자동차 부품 산업의 일자리 전망

4.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현황 분석

### 정부 목표와 국내 부품업계 현황

- (정부목표) 2030년까지 부품기업 1천개사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수립, 미래차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중
- (업계현황) 부품기업의 84%가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 도급단계로는 2차 이상의 하위 협력사 비중이 89% 수준으로 매우 큼
  - ✓ (경영) 최근 코로나19, 반도체 수급, 탄소중립 등 한꺼번에 덮친 이슈들로 인한 영업이익률 저하로 미래차 투자여력 약화
  - ✓ (기술) 연구소를 운영 중인 기업 비중은 전체의 14%에 불과, 이마저도 1차 협력사에 집중되어 미래차 기술역량 부족

<도급단계별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구분	도급 단계			매출액 규모		
	1차	2차	3차 이하	100억원 미만	1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이상
사업체 수	11.7%	36.7%	51.6%	84.1%	15.1%	0.8%
종사자 수	31.7%	44.3%	24.1%	41.2%	43.0%	15.8%

자료: 한국자동차연구원(2022.9.15.), 미래차 전환에 따른 국내 부품업계 및 고용 영향 전망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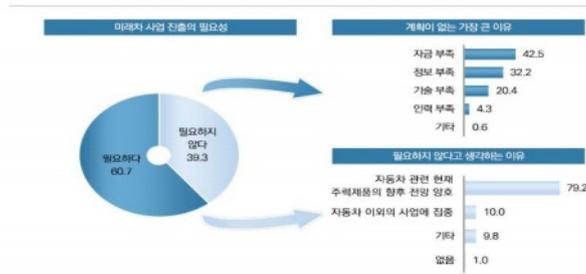
## 자동차 부품 산업의 일자리 전망

4.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현황 분석

### 국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대응

- (미래차전환) 미래차 전환 단계 중 생산단계 17.7%, 개발·계획 단계 9.6%, **미착수 단계 72.6%** 수준으로 상당수 기업이 대비 부족
  - ✓ (양적)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2~3차 협력사일수록 대비 부족, 내연기관 엔진업종 기업들은 계획수립 단계 비중이 높음
  - ✓ (질적) 전환업종은 미래차 유망부품보다는 **보유기술로 진입가능한 업종으로, 전환방식은 자체 역량보다는 고객사와 연계를 통한 방식**이 주류인 것으로 추정
    - (전환업종) 엔진 부품기업은 모터 및 배터리의 하우징 부품으로, 변속기 부품기업은 감속기 부품으로, 전장/센서 부품기업은 자율차 부품으로 전환 중인 기업들이 다수 조사
    - (전환동인) 해당 미래차 부품을 선정하게 된 동인은 고객사 요구가 68%로 자체선정 32%보다 2배 이상 높음
- (인력확보) 연구개발인력은 신규 채용, 그 외 인력은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통해 확보하는 방식 우세
  - ✓ 경영관리/영업인력(신규 27.9%, 기존 인력 재교육 65.1%), 생산/기술인력(신규 23.7%, 기존 인력 재교육 65.2%), R&D인력(신규 57.5%, 기존 인력 재교육 30.0%)

<국내 부품기업 중 미래차대비 미착수 대상 조사>



자료: 한국자동차연구원(2022.9.15.), 미래차 전환에 따른 국내 부품업계 및 고용 영향 전망

33

##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현황

4.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현황 분석

### 중소기업 고탄소 업종 특성

- 산업부문 중 중소기업(300인 미만, 추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1%인 1.08억톤, 이는 국가 전체 총배출량(7.28억톤)의 약 15% 수준
  - ✓ 산업부문 및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저탄소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
- (고탄소업종 분포) 중소기업은 대·중견기업 대비 총배출량 상위 업종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상위업종의 구성도 다양
  - ✓ 대·중견기업은 배출량 상위 5개 업종이 배출량의 94% 차지, 중소기업은 상위 10개 업종이 배출량의 83% 차지
  - ✓ 중소기업에서는 대·중견기업과 달리 금속가공 등 뿌리업종이 상위업종에 포함되는 구성상 차이 존재
- 배출량 상위 업종의 업종별 업체수가 대·중견기업은 150개 미만, 중소기업은 2천여개를 상회해 관리 어려움
  - ✓ 중소기업(300인 미만): 기타기계(12,169개), 금속가공(12,132개), 식료품(9,316개) 등
  - ✓ 대·중견기업(300인 이상): 1차금속(49개), 화학제품(72개), 석유정제(5개) 등
- (고탄소업종 다배출 원인) 10대 고탄소 업종의 다배출 원인은 고탄소 연료·원료 사용, 공정특성, 낮은 에너지 효율 등 업종별로 상이·복합적
  - ✓ 고탄소 업종별로 모두 다른 배출 원인에 따라 신기술 개발, 공정 혁신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사업전환 등 맞춤형 대응 필요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단위 : 백만톤CO<sub>2</sub>e, %)

국가 전체(A)	산업부문 외(A-B, 추정)	계	산업부문(B)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계	10인미만	10~99인	100~299인	
727.6 (100.0)	377.8 (51.9)	349.8 (48.1)	108.4 (14.9)	22.4 (3.1)	47.6 (6.5)	38.4 (5.3)	241.4 (33.2)

\* (국가전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18년 기준, 환경부)  
(산업부문) 2019년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18년 기준, 산업부)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21.12.), 중소기업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

34

##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현황

4.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현황 분석

### 지역 단위별 고탄소 업종 비중

- 지역 단위: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중소기업 중 고탄소업종 사업체, 종사자의 59.5%, 64.3%가 비수도권에 위치
  - ✓ 종사자의 64.3%, 부가가치의 63.3%가 비수도권에 위치
  - ✓ 비수도권에 속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은 (역내) 중소기업 사업체(종사자, 부가가치)의 37.7%(35.1%, 3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탄소업종 위기에 더욱 큰 비중으로 노출
- 시도 단위: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의 고탄소업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위
  - ✓ 울산광역시 경우 고탄소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체 비중이 50.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부가가치 비중에서는 9.1%로 낮은 수준
  - ✓ 대구광역시의 경우 고탄소업종에 종사자 비중이 33.8%로 가장 높으면서 동시에 부가가치 비중도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시도별 >

	사업체수			종사자			부가가치		
	(천 개)	중기 고탄소 (천 개, %)	중기 및 고탄소 (천 개, %)	(천 명)	중기 고탄소 (천 명, %)	중기 및 고탄소 (천 명, %)	(조 원)	중기 고탄소 (조 원, %)	중기 및 고탄소 (조 원, %)
전국	69.9	68.4	22.3	2,935	2,070	628	557.1	220.3	70.2
수도권	33.6	33.6	11.2	1,190	76.7	118.7	226.8	43.5	11.3
서울특별시	4.1	4.1	11.2	104	89.8	9.5	14.7	67.7	8.8
인천광역시	4.6	4.6	31.2	172	77.2	22.1	22.0	59.3	17.6
경기도	24.9	24.9	28.6	915	75.1	19.1	190.1	39.8	10.8
비수도권	36.1	36.1	36.5	1,728	66.3	23.2	327.4	36.7	13.5
부산	4.2	4.2	34.3	134	83.2	27.5	15.1	69.9	24.8
대구	3.3	3.3	43.6	103	87.8	33.8	11.1	76.4	28.4
광주	1.3	1.3	26.4	64	63.4	14.2	10.2	40.8	10.8
대전	0.9	0.9	20.2	42	69.9	12.1	7.0	46.9	9.1
울산	1.8	1.8	50.4	171	40.6	23.3	41.7	16.4	9.1
강원	1.1	1.1	26.1	43	82.6	17.4	6.4	64.4	14.3
충북	3.2	3.2	32.9	177	66.9	17.9	35.4	39.5	11.4
충남	4.3	4.3	30.3	252	62.4	17.0	63.6	28.7	9.0
전북	1.8	1.8	31.1	85	67.9	19.2	12.9	48	14.9
전남	1.8	1.8	44.9	94	54.3	27.3	31.6	17.1	9.6
경북	5.2	5.2	39.4	240	65.2	23.6	45.9	36.8	14.8
경남	6.9	6.9	39.6	318	70.3	29.7	46.0	47.3	19.8
제주	0.2	0.2	30.7	5	91.8	22.2	0.7	67.3	21.5

주: [%] = column percent, 즉, 전체(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에서 중소기업 및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19년 - 종사자 10인 이상 규모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21.9.6.), 지역별 고탄소배출 업종 비중 추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35

###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현황

####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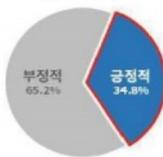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1,000개사 중 400개사 응답), **응답기업의 68.8%가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평가**
- ✓ '경쟁력 약화 위기'(23.5%) 또는 '업종 존속 위기'(7.7%) 등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기업은 31.2%**

#### 중소·중견기업이 투자계획 없는 이유

- 응답기업의 66.0%가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감축 설비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 반면 **34.0%는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투자 분야로는 '에너지효율 개선'이 68.2%로 가장 많았고, '재생에너지 사용'(24.2%), '폐열 회수'(18.6%), '연료 전환'(11.7%), '공정가스 감축'(8.3%), '자원 순환'(7.6%), '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2.7%)의 순<복수응답>
- 투자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그 이유로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42.5%)**을 가장 많이 꼽았고, '감축수단·기술 부족'(33.1%), '배출량 감소로 투자 불필요'(11.9%), '배출권 가격 등 투자 인센티브 불확실성(8.8%)의 순
-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감축수단·기술 부족'(34.8%)을, **중소·중견기업은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45.3%)**을 가장 많이 꼽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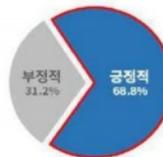
#### <탄소중립이 자사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022년 2월 조사결과  
(374개사 응답)



→

2023년 2월 조사결과  
(400개사 응답)



#### <투자계획 없는 이유>

구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1순위	감축수단·기술 부족(34.8%)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45.3%)
2순위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26.1%)	감축수단·기술 부족(32.8%)
3순위	투자 인센티브 불확실성(17.4%)	배출량 감소로 투자 불필요(10.9%)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감축설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본인 부담률이 높고, 기존 시설 철거, 건물 공사, 토지구입 등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다” - 중소기업 B사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23.2.28.),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실태와 지원과제 조사

## 5.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

##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5.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

### 1. 중소기업 탄소중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토대로 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 ✓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체계와 정의로운 전환 지원사업, 정의로운 전환 기업육성 방안을 담은 법안 추진 필요
- ✓ 관련해 기존 발의된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후속 법안 제정 필요
- ✓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개정 필요: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등을 사업 전환 범위에 포함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안)>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정의</li> <li>▪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소기업의 의무</li> <li>▪ 적용범위</li> <li>▪ 다른 법률과의 관계</li> </ul>
제2장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li> <li>▪ 중소기업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li> <li>▪ 전담기관 지정/통계작성</li> </ul>
제3장 중소기업 정의로운 전환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제공/진단 및 컨설팅 지원/금융 지원/세제 지원</li> <li>▪ 전문인력 및 교육 지원/기술개발 및 이전·확산 지원</li> <li>▪ 중소기업 간 협력 지원/상생협력 지원/시급 업종 등 지원</li> <li>▪ 정의로운 사업 전환 지원</li> </ul>
제4장 정의로운 전환 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지원</li> <li>▪ 정의로운 전환 혁신기업의 확인·우선 지원·특례 및 부담금 면제</li> </ul>

38

##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5.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

### 2. 중소기업 탄소중립의 지원을 위한 통계·정보체계 마련

- 온실가스 배출 현황, 업종별 특성 등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통계·정보체계 구축
- ✓ 기존 온실가스 통계에서 중소기업 통계 별도 구분,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
- ✓ 관련 특별법 제·개정으로 중소기업 분야 정책 영역 및 정책 인프라 확보

### 3.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

- 중소기업 ESG 민관 협의회 산하에 민간(유관단체)·지역(TP)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위원회'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기부 내 전담부서 마련

### 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전환 수요 선제 발굴, 사업전환과 노동전환을 통합 지원
-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센터별 특화업종 지정, 미래차·재생에너지 등 분야로의 전환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전환 이행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사업전환 자금 지원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위원회(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1.12.),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

39

### 중소상공인의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5.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

#### 5. 중소기업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체계 마련

- 탄소중립법상 정의로운 전환 대상인 **중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법안은 없는 상황**
- 최근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 필요
  -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23.3.7.)
- 에너지가격 지원을 넘어 **중소상공인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 중소기업의 연료 전환[도시가스→전기(재생에너지 기반)] 지원 방안 마련
- ✓ **주유소, 자동차 정비업, 발전소 인근 상권 등 정의로운 전환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

#### 6. 주유소 산업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 지원

- 기존 주유소를 전기 충전과 함께 연료전지 활용 소규모 발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 제도 정비
- ✓ 규제샌드박스 등으로 주유소-충전기 간 이격거리 제한 완화 및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근거 마련

#### 7.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 정비인력 교육제도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 필요**
- ✓ **정비인력 교육내용, 방법, 시기 및 교육기관 지정 등 근거규정 마련**
- ✓ 현재 추진 중인 정비인력 교육사업 법제화, 전문성·신뢰성 강화, 제품주기별 현장기술인재 양성 확대
- 교육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프로그램 구축 통해 정기검사원 교육 기반 마련
- 미래차 환경인증평가 및 충전인프라 효율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인력 양성

40

###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체계

5.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

#### 8.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는 **‘탄소중립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 위원회에 노동계는 참여하고 있지 않음
-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 노동 위원은 현재 0명, 그 결과 고용 정책은 물론 산업정책이나 노동사회정책 의제 축소
- 탄소중립기본법에는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기후정의 원칙 명시
- 노동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청년, 여성, 농어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1.4.16.),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

41

##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체계

5.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

### 9. 산업·노동전환시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 산업전환시 노동전환 근거 법률에 **직무전환 교육을 넘어 고용보장** 내용 포함
- 1) 전환배치의 경우 고용보장, 전환배치를 위한 공간 확보, 사업장 내에서 다른 직무로의 배치를 위한 교육 훈련
- 2) 전직의 경우 전직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 또는 지역내 일자리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과제
- 3) 실직의 경우 실업수당 외에 생계 및 주거 지원을 위한 공동기금의 마련 등의 과제
- 노동전환 관련 입법안(노동전환지원법, 정의로운일자리전환지원법, 고용안정지원법)의 논의 과정에서 고용 보장 내용 포함 추진

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22.11.22.), 산업전환 시 고용노동 지원법안 입법공청회.

### 10. 지역단위 맞춤형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 구축

- 충청남도는 탈석탄 및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계획수립, 자치법규 마련, 기금 조성, 중앙정부 정책변화 요구, 국내외 협력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선도사례로 꼽힘
- ✓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가 탄소중립위원회와 노사민정협의회로 이원화되어 있고, 최근에는 노정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중심으로 노동전환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고 있음
- 울산시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도형 자동차부품산업 전환지도 작성 등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채널인 자동차산업 노사정 미래포럼 운영
- 경기도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요자인 산업(기업), 노동자,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연계하고 관계망을 구축하며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 제안
- 지역 자율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이행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 분류체계 마련(대도시 집중형, 산업발전형, 복합형 등)
-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담체계 구축
- ✓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의 거점인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자료: 고재경 외(2022.8.),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 구축 기초 연구

발제 2

# 3高와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방안

서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변호사



## 3高와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방안

서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변호사

## 3高와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방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서치원 변호사

2023. 3. 29.

## 3고 현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 '23년 물가, 금리, 환율수준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초과하거나 근접한 수준
- 3고 현상지속, 수출둔화세 확대, 소비둔화 등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 모두 둔화 전망
- 특히, 내수·수출 동반위축에 따라 **제조업 부진은 더욱 심화, 서비스업의 회복도 제한적** + 기업내·외부적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워지며 전반적 중소기업 유동성 악화 +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복합위기 상황에서 비용증가와 소비위축으로 경영상황 악화**(2023년 경제 및 중소기업 전망, IBK기업은행, 2023.)

2023년  
중소기업 경기

“저성장·고금리의 복합위기”

(생산/수출) 수출·내수 동반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3고에 따른 불안요인 지속으로 투자 위축  
(자금사정) 고금리, 은행의 보수적 대출태도 등으로 자금사정 악화 예상

## 3고 현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제조업 업황BSI<sup>1)</sup> 추이



- 한국은행 발표 2023. 1.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 1월 업황BSI는 66으로 전월에 비해 5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65)도 전월에 비해 3p 하락
- 전체 추이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국면

제조업 경영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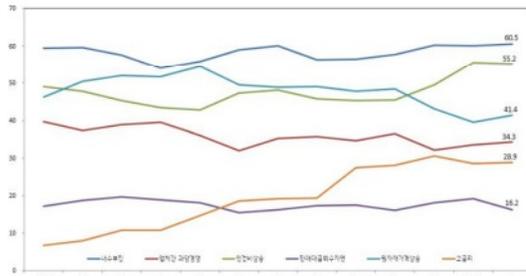
	(비중, %)						
	불확실한 경제상황	원자재 가격상승	내수부진	인력난· 인건비상승	수출부진	자금부족	기타없음
'22. 12월(A)	22.0	17.2	10.6	9.4	7.0	6.5	27.1
'23. 1월(B)	26.5	12.6	12.4	9.2	7.3	5.6	26.4
B-A(%p)	+4.5	-4.6	+1.6	-0.2	+0.3	-0.9	-0.7

- 제조업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 내수부진, 원자재가격상승(제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

## 3고 현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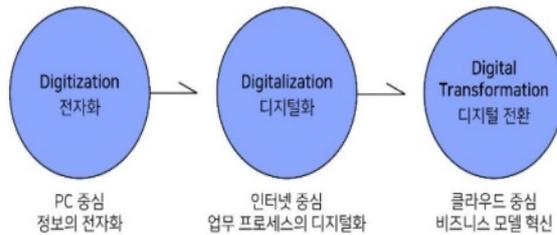
- 중소기업중앙회, 2023. 3. 「업종별 중소기업 애로 및 경기전망조사 결과」 중소기업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코로나 전성기인 2020.상반기 최저점 기록 후 상승하는듯 하였으나 **장기평균(72)을 하회하는 하강 국면(71)**



- 주요 경영애로 사항으로, 판매대금 회수지연(19.2 → 16.2), 인건비 상승(55.5 → 55.2) 등 응답비중은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원자재 가격상승(39.5 → 41.4)**, 업체간 과당경쟁(33.5 → 34.3), **내수부진(60.0 → 60.5)**, 고금리(28.6 → 28.9) 응답비중은 전월대비 상승함

## 디지털 전환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OECD(2019)



<https://ko.onepredict.ai/press/?q=YToxOntzOjE4OjE0LzY3LzB3KXk3R5cGUlO3M6MzoiYWxsJt9&bmode=view&idx=14315147&t=board>

디지털 전환은 추상도가 높고, 현재진행형인 현상에 대한 가치지향적 개념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실용성이 약함

- 맥킨지(McKinsey)의 조사(2019)에 따르면 석유, 자동차, 제약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률은 4~11%에 불과하고 기술, 미디어, 통신 등과 같은 디지털 기반의 산업에서조차도 성공률은 26% 이하 ([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6/2020110602108.html](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6/2020110602108.html))

## 디지털 전환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그림 4-13] 산업별 대·중소기업 스마트화(디지털 전환) 수준

(Base: 각 산업 별 기업, 단위: 점, %)

- 디지털 격차는 기업간 생산성, 성장성, 혁신 등에서 격차 확대를 유발하고, 기술 폐쇄(또는 기술탈취), 경쟁 왜곡 등의 문제를 가져옴.
- 결국 디지털 격차는 궁극적으로 기업, 계층, 부문 간 불평등 증대로 귀결되며, 디지털 전환의 속성상 네트워크효과를 선점한 선도기업의



경쟁우위가 더욱 강하게 관철됨에 따라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개연성 높음.

그러나 우리 현실은 대기업 대비 제조업 45.5%, 건설업 41.5%, 도소매업 44.9%, 운수업 33%, 정보통신업 71.5%, 지식서비스업 18.2%, 녹색환경산업 62.1% 수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디지털 격차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

##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방안-수직적·전속적 거래구조 개선

- 소부장 납품거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47%에 이르고, 소부장 산업은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대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산업이지만 중국의 소부장 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 등이 떨어지고 있음. 오늘날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종래 중소기업이 가격경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수직적·전속적 거래구조에서 배태**되었다 볼 수 있음
- 예컨대, 자동차 부품시장의 경우 수요독점적 거래구조에서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의 성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함(협상력 부재로 제값을 받기보다 계속적 거래를 선택) ➡ 중소기업의 혁신유인 감소 및 납품단가 인하 경쟁(기술개발이 아닌 열악한 노동조건을 통한 원가절감) ➡ 우수인재 이탈 및 기술역량 저하 ➡ 경쟁력 약화로 인한 협상력 부재의 악순환
- 이러한 거래구조하에서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 문제해결이 매우 어려움

##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방안-수직적·전속적 거래구조 개선

- 대기업 위주의 수직적·전속적 거래구조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와 같은 서비스업에서도 나타나는 등 산업전반에 만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2009년과 2021년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와 업체수는 각각 9.8만→ 9.45만명, 3.4만→3.6만개로 업체수는 늘고 종사자 수는 줄어 정비업체의 소형화 경향을 보임. **사고정비 물량의 80%를 보험사가 제공하는 수요독점 시장**으로 정비업, 부품대리점, 견인차량사업 등이 보험사에 수직계열화되어 있음. 보험사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보험금 미지급, 손해사정내역 미공개, 견적 없이 수리 후 수리대금 일방 결정하여 통보 등 불공정행위. 그러나 **정비업체는 거래단절을 염려하여 제대로 문제삼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보험사는 원사업자가 아니며 고객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거래의 당사자(대금지급 등)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상생협력법 적용(위수탁관계로 인정)시도 있었으나 무산 -> 보험수리 거래에도 하도급법 적용하는 입법 필요(현행법상 하도급법의 업역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

##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방안-수직적·전속적 거래구조 개선

- 수직적·전속적 거래구조를 개선하려는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
- 예컨대, 전속적 거래구조를 개선하고자 **자동차부품 중 인증대체부품의 독자적 판로를 개척**하려는 시도 ➡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 **전속거래구조하의 새로운 유통망** 형성 어려움 + 대기업의 디자인권 행사 문제 등으로 성과내기 어려운 상황
- 경기도의 케이파츠 사업: '자동차를 사용하다 보면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OEM부품을 비싼 값에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자동차 부품 시장의 독점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은 **자동차 수리비용을 절감**하며, **중소 부품 업체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xn--hu5b25jftau9j.com/index.html>
- 공공의 플랫폼 개설지원, 소비자 대상 홍보 등 노력 계속되어야 함

##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방안-수직적·전속적 거래구조 개선

개별기업의 교섭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되었으나, 현장에서의 실효성 확보 위해서는 세심한 설계와 관리가 필요함(시장자율에만 맡겨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음-납품대금 조정제도의 예)

- **주요 원재료의 범위:** 원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천연물에 한정할 것인지, 가공물을 포함하는 경우 물리적 가공 방법으로 한정할 것인지, 중간재 기타 생산요소 중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
- 약정서작성의무 면제 대상인 90일 이내 수위탁거래기간 및 1억원 이하 납품대금의 범위를 얼마나 할 것인지
-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입증책임과 합의의 방식을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
-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별도의 탈법행위로 보아 제재할 수 있을 것인지
- 변동분에 연동한 납품대금 연동의 의미 구체화

(예)납품대금 조정액=변동분\*납품대금중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원재료가격\*원재료 투입량) 또는 [원재료가격\*(생산량\*원재료 투입 대비 평균 산출량)]

##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방안-수직적·전속적 거래구조 개선

- 한편, 원자재가격변동 주기를 사전협의함으로써 납품단가협의와의 시차 최소화 방안 (소위 '사전예고제')도 필요함
- 최근 중기부와 공정위가 아래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제 공동추진 협의하였음
  - 첫째, 두 부처의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한다.
  - 둘째, 그간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
  - 셋째,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그러나 3고 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부처간 협의로 시간이 지연되는 모습은 우려되는 지점
- 앞서 살펴본 시행령 제정시 고려할 점에 더해 사전예고제의 도입 가능성과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방안-단체협상력 강화

- **국제 원자재 가격 약 10% 상승 시 우리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약 0.8%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현재 수준이 장기화 될 경우 소규모 및 주요 업종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약 10~1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특히 광물, 금속/비금속 원자재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속/비금속가공 및 제조, 기계/장비/운송 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폭이 클 가능성이 높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2.)
- 중소기업체 **61.8%가 원자재 생산 대기업의 가격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는다** 답했으며, '구두협 의(21.0%)' 및 '계약서 작성(16.6%)'가 뒤를 이었음. **원자재 가격 변동주기 또한 '수시(76.2%)'**가 가장 많고, 1년 단위는 16.8%로 나타났음. 반면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위탁기업과의 납품단가 협상주기는 '1년(40.4%)', '수시(38.4%)' 순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주기(수시, 76.2%)와 시차가 존재했음(「원자재 가격변동 및 수급불안정 관련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21.)

##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방안-단체협상력 강화

- **위수탁거래관계가 아닌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연동제 이용 불가**  
-> 공급독점 대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의 필요성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위수탁거래관계가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고려 부족 -> 공급독점 대기업으로부터 원재료 구매시에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취지를 적용할 방안 필요
- **중소기업이 개별적 구매계약 체결하는 경우 대기업의 공급원가를 제대로 협상하기 어려움**  
-> 단체협상력 강화에 의한 단체교섭 및 단체계약 체결(일본식 모델),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적용의 예외 또는 배제(독일식 모델) 등 검토

##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방안-단체협상력 강화

※ 일본의 단체협약 제도

- 단체협약제도는 1949년 도입된 이후 일본의 중소기업 교섭력 확보에 기여

- 단체협약 도입 일본의 대-중소 임금 격차는 우리보다 상당히 작음(2017년 기준, 대기업 대비 중견·중소기업 임금비중 일본 88.1%, 한국 5

54.2%)  
• 일본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https://law.nanet.go.kr/lawlibrary/totalsearch/list.do> -국회법률도서관 외국법률정보)

제9조의2(사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소조합) ① 사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 6.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⑫ 사업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소조합의 조합원과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자(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다)는 거래조건에 관하여 사업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소조합의 대표자(이러한 조합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협동조합연합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다.**

⑬ 제1항제6호의 단체적 계약은 미리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호의 단체적 계약임을 명시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⑭ **제1항제6호의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⑮ **조합원이 제1항제6호의 단체적 계약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한 때에는 그 위반한 부분은 단체적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방안-단체협상력 강화

### •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종래 경쟁당국의 허가를 받는 방식(우리의 인가방식과 유사함)과 일정 요건 충족시 적용면제(제외)를 받는 방식을 운영하였으나, 2005년 경쟁당국의 허가 방식 폐지

• 우리 인가제도는 1988년 1건(10개 밸브제조업자의 생선품목 및 규격제한, 물량배정, 원자재 공동구매 등), 2007년 1건(속초시 젓갈협회 소속 5개 사업자 연구기술개발) 인가 후 적용예 없으며 신청건수도 거의 없어 사문화

적용면제(제외) 방식은 경쟁제한방지법에서 중소기업, 농업, 언론, 물산업에 대해 인정되고, 금융·보험, 운송 등 특정 산업은 개별법률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음. 동법 제3조가 정한 요건은 ①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간 합의일 것(규모를 따지지 않음)**, ② **경제적 과정의 합리화를 대상으로 한 협정 또는 결정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개선에 기여할 것**, ③ **협정 또는 결정으로 본질적으로 경쟁이 저해되지 않을 것 등**

• 과거 우리 판례는 중소기업간 합의에도 매출이 30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적용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바 있음.

독일이 중소기업 카르텔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현저히 저해 또는 왜곡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 능력이 개선되어 시장에서의 경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경쟁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기 때문**

##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방안-단체협상력 강화

### 일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5조의2(「사적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사적독점금지법」 제8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중앙회가 실시하는 제74조제1항 각 호 및 전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지도와 연락, 정보제공, 연구, 전시회 또는박람회 개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대가를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한민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방안-단체협상력 강화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 제1항 단서에서 '소비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음. -> 공정위는 교섭 상대방인 대기업도 '소비자'로 해석해 조합의 공동행위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판단. -> 소비자 기본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 이를 반영하여 대기업 등이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가격인상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계류중(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방안-불공정거래행위 근절

- 최근 가맹점, 대리점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추세(과거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시 양상과 유사)
- 시중가 6500원짜리 고기 1만5천원에 공급 '폭리'/밀키트 '밀어내기' 이어 머리끈·가방 고리도 강매/필수물품 사입·겸업금지 근거로 수천만원 소송도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2425.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2425.html)
- 점주 제안으로 만든 온라인몰 회수 '수익 독점'/"모든 매장 통폐합...2024년까지 운영 종료"/인기 모델 직영점에만 공급 '수량 통제' 갑질도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5054.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5054.html)
- 가맹점주에 '신종 갑질'/"소비자 3만5천원 쿠폰으로 3만7천원짜리 사면 2천원 점주 부담...본사 판촉비 가맹점에 떠넘겨"/가맹점 할인금액 돈 대신 본사 원두로 주기도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7957.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7957.html)
- 가맹비 면제로 가맹점 늘리고, 경영난 폐점 요청하자 위약금+면제금 토해내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0444.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0444.html)

##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방안-불공정거래행위 근절

- 최근 가맹점, 대리점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추세(과거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시 양상과 유사)
- '폭언·갑질' 항의한 대리점협 간부 11명 계약 해지/점주 "공분 일자 사과 시능...2년 뒤 뒤끝 보복"/점포 옆 직영점 열기도..."대리점법·공정거래법 위반"/본사 "다양한 사안 속 고해 해지 결정...보복 아냐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4356.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4356.html)
- "곰팡이·SPL 사망 사고 뒤 불매운동/본사 탓 피해로 매출 뚝...폐업 위기"/물품 대금 밀린 가맹점에 공급 중단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5247.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5247.html)
- 본사가 2019년까지 신규 계약을 체결해놓고도 2020년 4월 느닷없이 가맹사업 중단/본사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지사장 상당수를 계약 해지하고 학원으로 가맹한 가맹사업자들에게는 교재, 동영상 등 영업 지원을 중단/공정위 무혐의 결정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020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020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365일 행사' 점주들에 떠넘겨...본사 보조 '쥐꼬리'/배달비 전액 부담·물류비 정액 부과로 점주 고통/바닥 세제 등 권장 품목인데 다른 제품 쓰면 '감점'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4194.html?\\_ns=c1](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4194.html?_ns=c1)

##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방안-플랫폼 공정화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는 누리기 어려운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과 공간 기반을 확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확충하고 상품·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이용자 측면에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동원한 자사우대(최근 카카오택시의 콜몰아주기 사례 등), 경영정보 등 민감정보를 활용한 이해충돌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비책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시기 중소기업은 종래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서도 열위에 놓일 개연성이 매우 높음. 플랫폼의 중개자 성격과 자동화된 알고리즘 이용, 수직적 사업통합 등의 특성상 기존 수요독점 또는 공급독점과는 **차별화된 대책 마련**도 필요함

##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방안-플랫폼 공정화

- 코로나-19 국면에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중 도소매업 종사자수가 335만2천여명으로 제조업을 제치고 1위(2020년 기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온라인/디지털 전환 확대로 플랫폼 이용 및 진출이 활성화되었으나 성급한 정책중단으로 디지털 격차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최근 디지털화의 가속으로 인해 한번 벌어진 격차는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중소형마트 등에 대한 마이크로필필먼트 구축, 중소기업 맞춤형 공공플랫폼의 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플랫폼화를 위한 지원 필요. 또한 지나치게 과도한 수수료 문제 등 당사자간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나 어느 일방의 피해가 지나치게 큰 경우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자율규제로는 한계가 분명해 보임)

## 정책과 입법 추진 제안

- 수직적·전속적 거래구조 해소를 위한 하도급법 등 개선과 함께 지원정책(케이파츠 사업 등)을 병행해야 함
- 단체협상력 보완책인 납품대금연동제를 속도감 있게 확산해야 하고, 시장에만 맡길 경우 실패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세부사항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
-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해 원자재 독과점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감독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 정책과 입법 추진 제안

- 단체협상력 강화를 위한 일본식 단체협약제도 또는 독일식 적용면제제도를 실효성 있게 도입해야 함
- 경기침체 국면에서 또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점, 대리점,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강화해야 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권 등을 도입해야 함
- 플랫폼 분야도 시장에만 맡겨 둘 경우 기존 산업분야와 같은 수직적 전속적 거래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온플법) 통과 등 대책이 필요함

## 정책과 입법 추진 제안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확대 등 지원이 계속되어야 함. 이 때 양적지원보다 사례중심의 질적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점, 대기업 위주의 산업전환 전략으로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예컨대 스마트제조외의 경우 네트워크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 비용이 기대수익을 상회 ➡ 결국 스마트 제조를 주도하는 구매 대기업의 역할에 따라 생태계 성패가 좌우됨 ➡ 이에 대해 정책적 개입이 쉽지 않고 자발적 상생협력에 의존하게 됨 ➡ 중소기업 등 수급사업자에게 합리적인 범위의 편익을 보장할 때 호혜적인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가능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새로운 가치사슬 형성은 수평적 거래구조를 지향하며 당사자 사이 대등한 협상의 토대하에서만 가능

## 정책과 입법 추진 제안

디지털 전환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업종전환,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과 상담, 전환비용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예컨대, “미래자동차 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관점의 디지털 전환 정책마련이 필요함

**3고 현상에 대응하는 미시적인 정책도 필요함.** 예컨대 희망리턴패키지 만으로는 충분치 않음

- 중소기업은 한번 폐업하면 재기 어려운 것이 현실(대출상환 도래 등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심리적 타격) -> 폐업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집중 필요 -> 특히 과도한 부채를 파산회생등으로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함
- 소상공인지원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찾아가는 서비스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대상을 발굴할 필요 있음



토론 1

# 중소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양찬희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 중소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양찬희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 1. 협상력 강화 및 납품단기연동제 도입

#### 【가격예고제 정착 및 중소기업협상력 강화】

- 원유를 비롯한 철강·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수급 불균형까지 발생하며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차질
- 중소기업은 독과점 지위의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여 중간재를 생산, 이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넛크래커’ 상황에서 협상력 부족\*으로 원자재를 비싸게 공급받아 저가로 납품하는 이중고 발생

◇ 원자재 가격 인상 및 수급 불안정 실태조사 결과(21.7월, 500개사, 중기중앙회)  
○ 중소기업은 원자재 생산 대기업의 예고 없는 수시변동에 직면(구매가격 변동주기 76.2%), 가격인상 또한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등 원자재 생산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이 낮음(61.8%가 협의 없이 통보 받는다 답변)

- 더욱이 중소기업 대부분 원자재 구입시 담보설정을 통한 외상거래를 하고 있어 거래 기업 충성도가 높고 거래선 변경이 어려움
  - 당월에 구매한 원료 대금을 말일 청구, 익월 15일에 현금 결제
- 가격결정 시 원자재 공급 대기업이 고시한 가격에서 매입량, 결제 형태, 담보제공 여부 등에 의해 중소기업마다 공급할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
  - 이에 따라 구매 수량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점 지남

⇒ ‘가격예고제’ 정착 등을 통한 수직적 거래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단체 교섭권’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관리 필요

ex) 일본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의 거래 상대방과 거래조건(가격, 지급 방법, 지급 시기, 거래물량 등)에 관해 협의 후 서면으로 단체협약 작성 → 조합의 총회 결의시 조합원 전체에 협약 효력

### 【납품대금연동제 안착】

- 「상생협력법」, 여·야 협치로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국회 통과(22.12.8.)
  - \* 「하도급법」 정무위 의결(23.2.20.) 및 법사위 계류 중
- 제값을 받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에 기여, 혁신을 통해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도 향상
  - \* 중소기업의 50.6%가 수탁기업, 47.2%의 근로자가 종사

⇒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방안 마련 필요

(1) 연동제 적용기준	①원재료 범위 및 활용 가능지표 명시 ②합의시 대상 확대(원재료비→원재료비+기타비용)
(2) 적용 예외사항 최소화	규모별·업종별 특수성 고려 시행규칙 위임
(3) 탈법 및 합의강요 방지	쪼개기 계약의 대표유형 시행령에 명시
(4) 탈법 및 합의강요에 대한 분쟁 방지	탈법·상호합의에 대한 입증책임 위탁기업에 부여
(5) 중소기업 지원 강화	연동지원본부의 역할에 가격기준 지표 관련 사항 추가

- 한편, 현재 추진 중인 납품대금 연동은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는 연동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 특히 뿌리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열처리 등)은 원가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영업이익의 43.9%를 전력비로 지출하는 등 타업종 대비 전기료 부담이 높은 상황
    - \* 열처리 : 26.3%, 주조 : 14.7% 등
- 산업용 전기료는 '22년에만 27.0%가 급등하였으나,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단가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법률 조속 보완 필요 :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원재료비→원재료비·노무비·경비)

## 2. GX(그린전환)

### □ 중소기업 배출현황

【배출특징 : 표준화 부재】

- 중소기업은 산업부문 배출량의 약 30%, 국가전체배출량의 14.5% 차지
- 또한, 고탄소업종이 넓게 분포 → 업종별 다양한 CASE 존재
  - 고탄소별업체수, 대기업은 150개사 미만이나 중소기업은 2천여개를 상회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현황〉



〈기업규모별 배출량 상위 5대업종〉

중소기업			대기업		
업종	배출량	비중	업종	배출량	비중
화학제품	23,961	23.5%	1차금속	123,373	50.5%
비금속	11,842	11.6%	화학제품	36,132	14.8%
1차금속	9,260	9.1%	석유정제	35,324	14.4%
금속가공	7,555	7.4%	전자부품	21,861	8.9%
식료품	7,025	6.9%	비금속	12,623	5.2%

단위: 천톤, % / 출처: 중기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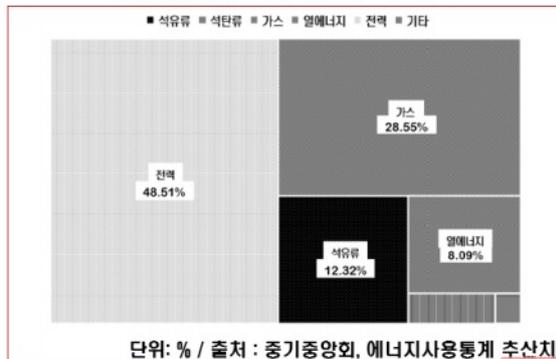
【배출특징 : 간접배출 多】

- 중소기업, 소비량기준 에너지의 78.7%를 전력에 의존(석유 11.3%, 가스 8.7% 順,)
- 감축규제에 간접배출 포함추세 움직임 : 중소기업 부담 ↑
  - 특히, 전력다소비 업종인 뿌리중소기업 추가대응 필요
  - 금속은 전력(72.9%~82.3%), 시멘트는 전력(44.0%)과 석유(34.5%)가 주에너지

〈에너지원 종류별 구성: 중소기업〉



〈에너지원 종류별 구성: 대기업〉



## □ 정책제언

### 【중소기업 자산손실 지원】

-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에는 자산손실 대상이 명시
  - \* 법 제50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 온실가스배출권할당 및 에너지목표관리제 기준과 동일, 대부분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은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
  - \* 의무감축대상은 약 20% 미만으로 추산
- 5대 발전공기업의 하청업체 수는 약 800개사, 근로자수는 4,3천명에 달하며, 2,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
  - \*김경만 의원실('21.10.)
  - 납품·하청업체는 금속가공, 기계 등 탄소다배출 이외의 업종이 대다수로, 원청(석탄발전) 폐쇄시 경영에 심각한 타격
- 또한, 일부 해당되는 중소기업도 경영악화·불확실성 급등 등으로 한계봉착
  - \* 부산패션칼라(조) : '88년부터 60여개 기업에 석탄발전 통해 스팀 공급 중
  - △ 설계수명 다했으나 높은 교체비용(500억원) 등으로 친환경 전환에 애로
  - △ 또한 유연탄에서 LNG 교체시 LNG 비용등으로 스팀공급단가가 1.5~2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간접적 영향을 받지만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법개정·예산확대 등 추가지원 필요

### 【공급망 내 대·중기 탄소중립 상생체계 마련】

- 탄소중립, 철강, 석유화학 등 다배출·대규모사업장을 지닌 대기업 위주로 아젠다 설정되었으며, R&D 등 정부지원도 대기업에 집중
  - 반면,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어 있고 자발적 혁신유인이 부족해 탄소중립 요구에 비해 동참이 쉽지 않은 상황
  - \* 30대 대기업의 87%는 협력사 대상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대기업으로부터 ESG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43%는 평가대기업의 지원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23.1.)
- 가치사슬 내 대기업-중소기업간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녹색기술 이전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상생 거버넌스 마련

【뿌리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 도입】

- '22년 1월 대비 전기요금은 31.7%, LNG는 33.8% 급등
  - △러·우크라 전쟁, △코로나 이후 경제활동 재개, △신재생에너지 급등 등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글로벌 미스매치 발생
  - \* 산업용 전기요금(원/킬로와트시) : ('22.1) 105.5원 → ('23.1) 137.9원 / 31.7%▲
  - 산업용 LNG요금(원/메가줄) : ('22.1) 22.2원 → ('23.1) 29.7원 / 33.8%▲
  - 한국도 타넷중립 이행, 한전·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적자와 맞물리며 에너지 가격이 급등\*, 중소기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 \* 전기요금, 中企 94.9% 부담 ...69.9%는 특별한 대책 없어('23.2., 중기중앙회)
- 먼저,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조, 열처리 등 뿌리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요금제 도입 시급
  - 전용요금제의 핵심은 요금을 덜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

- 
- ◎ 6월, 11월 여름·겨울철 요금 → 봄·가을철 요금 적용
  - ◎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 요금 → 경부하 요금제 적용
  - ◎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3.7%) 인하
- 

【노후기기→고효율기기 교체 등 기초수준 지원확대】

- 수소환원제철, CCUS 등 미래기술 : 상용화까지 장(長)시간 / 대기업 중심 진행
  - 노후설비 교체 등 단순·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필요
- 국내외, 에너지공급자에 에너지 절감의무를 부여(EERS)
  - 한국은 '18년 부터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 중소기업은 노후모터 등의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사업 등이 해당
  - \* 에너지공단 고효율 인증 : 보일러, 펌프, 냉동기 등 3만여개 제품

- 
- ◎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및 보조율확대(50% 내외→80%)
  - ◎ 본사업 시행시 민간(에너지공급자)지원 외 정부자금 추가매칭
  - ◎ 사용량진단, 부하관리 등 요금절감 위한 에너지컨설팅 확대
-



토론 2

# 디지털과 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은 중소기업에게 위기인가?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디지털과 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은 중소기업에게 위기인가?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 디지털과 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은 중소기업에게 위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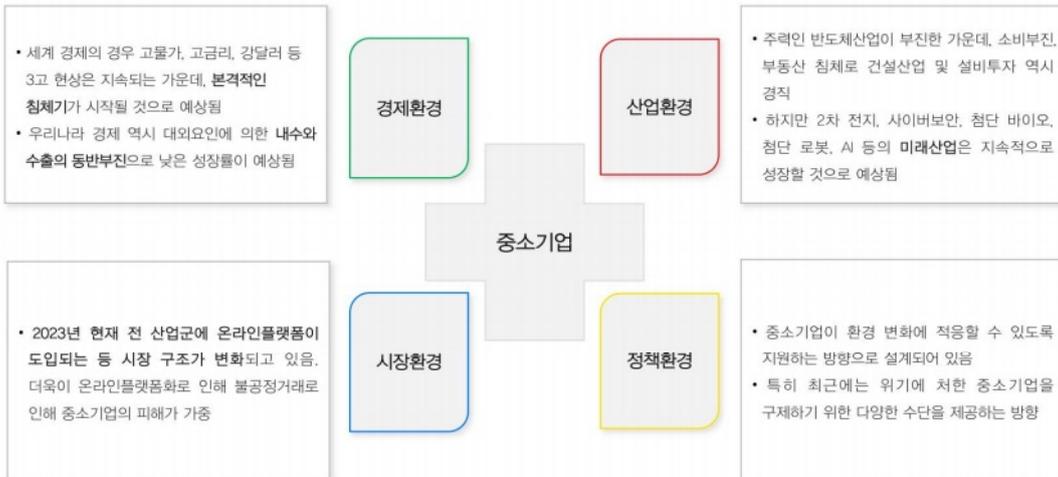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목차 KOSI

- I. 2023년,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 II.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의 중요성
- III. 디지털전환
- IV. 탄소중립

I. 2023년,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경제환경은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산업환경과 시장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정책환경은 중소기업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



## II.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의 중요성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중 가장 중요한 현상이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

디지털전환	vs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차 산업혁명으로 지능정보기술이 전 산업분야에 적용되면서 기존의 비즈니스를 디지털기술로 새롭게 구현하는 과정</li> </ul>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곧 탄소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남은 가스는 실질적으로 제거하도록 만드는 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이 처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더해, 산업구조의 변화</li> </ul>	결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이 처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더해, 산업구조의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의 발전에 의해 15여년 전부터 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현상</li> </ul>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류의 지속적 생존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각국 정부가 1990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21년 파리협정을 맺고 추진 중</li> </ul>

## III. 디지털전환 (1/3)

디지털전환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온 현상으로, **전산업**에서 진행 중

구분	내용
<p>디지털전환은 서비스업에서만 일어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O! 디지털전환의 중심은 전산업의 서비스화에 있음 (예) 전기콘센트를 생산하는 제조 <b>중소기업+지능화 기술, 연결 기술</b> - 전기콘센트 단순히 생산하고 판매 - 집에서 혹은 밖에서도 점등과 소등 기능 - 외출에서 들어오는 시간을 예측해 자동으로 점등, 취침 시 자동으로 소등 -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콘센트를 연결해서 전자제품 작동, 집안 위급 상황을 가족에게 자동으로 공유하고, 경찰 신고...</li> </ul>
<p>디지털전환으로 인해 중소기업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방식으로는 시장에서 도태</li> <li>따라서 <b>제품 및 서비스 자체의 고도화</b>가 이루어져야 하는데,</li> <li>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기획, 개발, 생산, 마케팅, 판매, A/S 등 <b>비즈니스 전반에 변화</b></li> </ul>
<p>디지털전환 초기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o.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발전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변화이므로, 이미 <b>상당부분 진행</b>되었음. 디지털전환 기회를 잘 살린 곳들이 GAFA, 네카쿠베</li> <li>디지털전환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은 오히려 <b>낮은</b> 편</li> </ul>

### Ⅲ. 디지털전환 (2/3)

디지털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

구분	내용
<p>정책적으로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제자는 중소기업이 디지털전환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기술탈취 근절, 단체협상력 강화, 3고현상과 대응, 플랫폼공정화, 디지털격차 해소). 디지털전환에 양면이 있는 만큼, 디지털전환에서 소외되었거나 디지털전환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역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 추진이 바람직</li> </ul> </li> <li>한편, 오랜 시간 동안 디지털전환이 전산업에서 이루어진 상황에서, 디지털화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먹거리는 무엇인지 기회요인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로 변화된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가 부족</li> <li>개별 기업별 디지털화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있어 왔으나, 제조와 서비스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기존 업종과 산업구조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것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생태계 활성화 (예, 제품은 서비스화가 진행되었고, 스마트공장 통해 생산되는 전자제품 제조업, 제품은 과거 그대로이나, 스마트공장 통해 생산되는 세탁세제 제조업은 다른 정책이 필요)</li> </ul>

### Ⅲ. 디지털전환 (3/3)

중소기업 스스로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도록 하되, 정부는 기술 제공과 교육 등 간접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구분	내용
<p>중소기업이 디지털전환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은 그 전환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스스로 해결해 나가되 부작용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li> <li>중소기업은 소비자(고객) 니즈를 파악해 이들이 원하고 상상하는 서비스를 기술에 의거해 개발하고 다시 소비자(고객)에게 제공하면 기회가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고객) 조사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li> <li>→ 비즈니스 모델 등도 이에 맞게 수정</li> </ul> </li> <li>중소기업이 지능화 기술과 연결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있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교육</li> </ul>

#### IV. 탄소중립 (1/2)

탄소중립은 산업계 요구가 아니라, 정부가 원칙을 세운 문제이므로, 중소기업에게 **규제**로 비춰질 가능성

구분	내용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독립적,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원칙이자 약속의 문제이므로 우리나라만 예외로 처리 할 수 없음</li> </ul>
탄소중립에 있어 핵심적 문제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도 탄소중립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참여해야 할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대응수준은 매우 낮아 수용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중앙회의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2021)</li> <li>- 응답기업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는 있고, 13.9%는 대응계획이 있다고 조사</li> <li>- 대응계획 수립하지 못한 이유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자금 및 인력 부족(58.7%), 탄소중립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부족(18.5%),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li> <li>- 속도에 있어서도 환경단체와 산업계가 가지는 온도차가 존재(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li> </ul> </li> </ul>

#### IV. 탄소중립 (2/2)

중소기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

구분	내용
정책적으로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은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할 문제</li> <li>• 발제자는 특별법 제정(통계 정보 체계 마련, 추진체계 구축, 지원 근거 마련, 사회대화 체계 구축, 사업 전환 시 고용보장정책, 지역단위 전환 플랫폼) 등을 제안. 모든 내용에 동의하며, 특히 탄소중립이 원칙임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별도로 추진 중인 ESG(환경분야)와 중첩성에 대해서는 고민</li> </ul> </li> <li>• 이에 더해 5가지 정책방안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중소기업에게 탄소중립이 규제가 아닌 의무이자 기회라는 홍보</li> <li>- 둘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중소기업(영세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기회를 부여</li> <li>- 셋째, 민간 내수영역의 제품 서비스에 대해 전기세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 내수영역에서는 탄소중립을 의무화</li> <li>- 넷째, 민간 수출영역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지원 시 탄소중립 도입을 우선 고려</li> <li>- 다섯째, 탄소중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파악. 탄소중립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산업뿐 아니라, 소외되는 산업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li> </ul> </li> </ul>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탄소중립이 의무화 될 것이므로, 타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이전부터 제품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 마케팅이나 판로 확보 시 활용</li> </ul>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연구위원

전화 : 02 707 9858  
이메일: sjjung@kosi.re.kr

---

**토론 3**

**디지털화 및 산업구조 전환과 가맹·대리점주 등  
소기업 위기 및 극복 방안  
-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디지털화 및 산업구조 전환과 가맹·대리점주 등  
소기업 위기 및 극복 방안  
-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디지털화 및 산업구조 전환과  
가맹·대리점주 등 소기업 위기 및 극복 방안  
-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2023. 3. 29.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 순서

I. 디지털화 및 산업구조 전환이 초래한 소기업 환경변화

II. 소기업 환경변화의 영향

III. 가맹 대리점주 등 소기업 위기극복 방안

IV. 맺음말

### I. 디지털화 및 산업구조 전환이 초래한 소기업 환경변화

#### 1. 시장형태 변화

부정기 시장 -> 정기적 시장(5일장) -> 상설시장 -> 대형·집적화 -> **온라인·모바일 시장화**

#### 2. 대기업·플랫폼사 등에서의 종속성 심화

자영업 영역 종속성 심화 -> 수익·배분구조 불합리·불공정 심화

=> **가맹·대리점주 등 소기업 수익악화**

#### 3. 사회계층 다층구조화와 가맹·대리점주 등 자영업자의 사회적 지위변화

##### **소자본가에서 생계형 사업자화**

##### ○ 계층구도 변화

기 존 : 자본가 - 노동자 계층구도

⇒ 다계층화 : 자본가(제1 계층) - 일정규모 사업장 노동자(제2 계층)

- 생계형 사업자(제3 계층) - 최저임금 노동자(제4 계층)

## II. 소기업 환경변화의 영향

### 1. 외식업 자영업자 수익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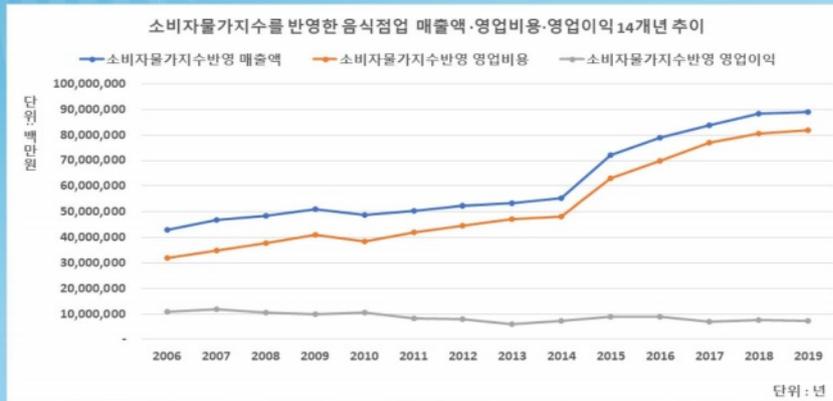
플랫폼사 시장지배강화 · 불공정 => 음식점업 자영업자 수익악화

: 음식점업 2006 ~ 2019년 14개년 추이

매출액(소비자물가지수 반영) : 2006년 42조 9천억 원에서 2019년 89조 원 -> 2.07배 상승

영업비용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 2006년 31조 9천억 원에서 110조 1천억 원 -> 2.56배 상승

=> **영업이익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 10조 9천억 원 --> 7조 3천억 원 (3조 6천억 원, 33% 감소)**



## II. 소기업 환경변화의 영향

### 2. 외식업 자영업자 독립사업주에서 종속적 공급자화

주문(중개) 뿐만 아니라 배달(대행)까지 플랫폼화로 가맹·대리점주 등 소기업은 2중으로 플랫폼에 종속

=> **수익악화, 고객정보 접근권 박탈, 외식업주에서 플랫폼사의 단순 공급자화**



## II. 소기업 환경변화의 영향

### 3. 도소매업 가맹·대리점주 등 소기업(자영업자) 생존권 위협

#### 가. 아디다스 점주 80% 갱신거절사건

온라인 판매비중 확대되자 온라인 영업권 박탈하고, 오프라인 점주 80% 갱신거절

#### 나. 쿠키점주 집단적 갱신거절 사건

쿠키점주 11명 집단적 갱신거절

### 4. 가맹·대리점 불공정 집단분쟁 붓물

#### 가. 이차들 사건

점주에 고기 값 2배 받고 납킨·머리곤 등 공산품까지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강매

#### 나. 투썸플레이스 사건

본사와 점주 수익 역관계 심화

## II. 소기업 환경변화의 영향

### 다. 떡참 사건

코로나기 가맹비 등 면제로 배달전문가맹점 모집 후 과도한 유통마진으로 가맹점 폐업하자  
위약금 폭탄

### 라. 쉐수학 사건

온라인 사업실패 책임 가맹지사 및 가맹점에 전가. 가맹지사 전체 갱신거절

### 마. 버거킹 사건

배달비에까지 로열티 부과, 배달팀 전액 점주전가

### 바. 기타

....

## II. 소기업 환경변화의 영향

### 4. 환경보호 위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실시 실상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 방안 (재활용 가능성 높은 표준컵 등)과 체계적 준비 필요성 제시 사례

홍보 및 준비 부족으로 보증금 납부를 거부하는 고객과 마찰 늘고, 매출감소 등으로 시행참여 저조하자 정부는 과태료 부과로 위협

-> 가장 힘없는 가맹·대리점주 등 소기업 팔비틀기식 시행

참고. 전가협 등 4개 단체 컵보증금 시범실시 100일 실태조사 발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3123114i>

## III. 가맹·대리점주 등 소기업 위기극복 방안

### 1. 협상권, 온라인법 제정 등 발제자 대응방안에 동의

가맹·대리점주 등 생계형 사업자들의 협상권 등 집단적 대응권 부여, 온라인규범 제정 및 보완(가맹점주 영업지역 온라인 확대) 필요성에 동의

### 2. 비주류 경제생태계 주요 정책대상화

다계층화 결과 분화된 주류 경제생태계와 비주류 경제생태계에 대응하여 가맹·대리점주 등 생계형 사업자화된 소기업과 이 영역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구성하는 비주류 경제생태계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해야

### 3. 거래안정성 보호

가맹, 대리, 수탁사업자 등 종속적 사업자의 거래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묵시적 갱신제 인정 및 계약 갱신요구권 보장

### Ⅲ. 가맹·대리점주 등 소기업 위기극복 방안

#### 4. 정보접근성 강화

##### 가. 플랫폼사업자 등 우위적 사업자 정보공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제를 도입하여 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공개, 제공의무 도입해야 함

##### 나. 고객정보 상품판매자에 제공

자영업자가 원칙적으로 상품판매의 계약당사자임에도 중개자 지위에 불과한 플랫폼이 고객정보를 차단하고 정보를 독점하여 자영업자를 종속화 시키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상품판매자인 자영업자에게 고객정보 제공하여 정보독점 해소

참고사례) 전가협 vs 배민 상생협약

##### 제2조(고객정보)

- ① 우형은 가맹점의 고객 정보 접근에 대한 장벽을 완화한다
- ② 우형은 고객이 스스로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및 가맹점의 단골 고객 관리를 위해 주문 접수 시 고객의 과거 주문 횟수를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 Ⅲ. 가맹·대리점주 등 소기업 위기극복 방안

#### 5. 플랫폼간, 플랫폼과 개인사이트간 호환성 보장

참고사례) 전가협 vs 배민 상생협약

제6조(플랫폼 간 호환) 우형은 배달의민족의 주문이 가맹점이 이용하는 배달주문앱, POS프로그램,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원활히 호환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 IV. 맺는말

- 가맹 대리점주 등 생계형 사업자화된 소기업이 형성하는 비주류 경제 생태계를 독립적이고 주된 정책대상으로 인식해야
- 사회제도적 준비가 주춤하는 동안 현장은 이미 불공정·불합리로 생존권 위기
- >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질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 집단적 대응권 보장/온라인 규범 제정
  - +
  - 정보접근성 강화
  - 종속적 자영업자 거래안정성 강화
  - 플랫폼 호환성 보장



토론 4

#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공정 거래 개선 과제

김경만 국회의원



##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공정 거래 개선 과제

김경만 국회의원

### 1. 중소기업 = 民生 (998178-1233119)

### 2. 대·중소기업 양극화 수준

#### ① 영업이익의 양극화

- 영업이익 : 대기업 73.5% vs 중소기업 26.5% ⇒ 2.8배
- 매출액영업이익률 : 대기업 7.0% vs 중소기업 3.5% ⇒ 2.0배
- ※ '21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 ② 소득의 양극화

- 근로자 평균소득 : 대기업 563만원 vs 중소기업 266만원 ⇒ 2.1배
- ※ '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 통계청

#### ③ 생산성의 양극화

- 1인당 노동생산성 : 대기업 394백만원 VS 중소기업 120백만원 ⇒ 3.3배
- ※ '20년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생산성본부

cf. 1시간 근로당 GDP창출(단위: 달러) : 미국 74.8 vs 한국 42.9 ⇒ 1.7배

※ '21년 국가별 노동생산성, OECD

미국 74.8 >독일 68.3 >프랑스 66.7 >영국 59.1 >일본 47.3 >한국 42.9

### 3.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의 함정

※ 2022.4.7. 오동윤 중기벤처기업연구원장 칼럼

- 제조 중소기업은 **납품 90%**(타기업 85%, 공공기관 5%, 소비자 10%), 수출 10%
- ‘납품관계’에서 생산성을 향상하려면 투자해서 생산원가를 낮춰야 하지만, 생산원가를 낮추면 거래처는 계약단가를 낮추려 함
- 납품은 경쟁에 의한 계약보다 관습이나 관행이 일반적, **고착화되고 의존적인 납품관계는 중소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더디게 함**
- 생산성 향상을 피하면서 일자리 유지하려면 생산량 증가는 불가피하므로 증가한 생산량을 팔 수 있도록 **해외 판로지원 필요**

- ◆ 중소기업이 투자여력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 ◆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화, 글로벌화 지원

### 4. 불공정거래 개선 필요성 인식

※ '22년 7월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재단법인 경청)

- 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 **79.4%가 ‘심각한 수준’ 인식**
- 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필요 응답**  
(1순위 35.4%, 2순위 49.3%)
- ③ 대기업의 대·중소기업간 상생 및 동반성장 노력에 대한 인식
  - 원자재 가격상승분 납품단가 반영 노력 44.4%
  - 단가 인하, 발주 후 반품행위 감소 노력 45.9%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노력 48.7%
  - 생산적 파트너십(소통) 강화 노력 51.2%
  -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감소 노력 51.7%

### 5. 불공정거래 개선 과제

#### ① 중소기업 제값 받기

##### (1)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안착

-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원재료를 주요원재료로 정하고 주요 원재료

의 가격이 10%이내에서 정한 비율 이상 변동시 그와 연동하여 납품대금 조정, 현재 상생법은 통과되었지만 하도급법은 법사위 계류 중임

- 법 시행('23.10.4.) 후 현장 안착여부 및 '연동하지 않기로 하는 예외사례'를 점검하여 필요시 법률 보완 필요

## (2) 공공조달정책 패러다임 전환(예산절감 중심 최저가낙찰 폐지)

- 지난 1월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공사비 삭감 장치인 '88%룰'을 제거해 업계로부터 환영받음. 그동안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되어온 불공정관행 제거로 업계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예정가격 산정시 적정한 거래실례가가 활용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신 가격자료 반영이나 기업이 참여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며,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 EU공공조달지침은 이미 '14년에 개정되어 '최저가입찰' 기준을 삭제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 기준을 단일기준으로 반영하여 최저가입찰제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저하와 친환경적 조달 장애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② 중소기업 아이디어, 성과, 기술 전면적 보호

### (1) 아이디어, 성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제재 강화

-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온라인서비스와 같은 경우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시장조사라는 명목으로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와 성과를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 현행법상 행정청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 이는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의지를 꺾는 불공정한 처사.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제재강화 필요

\* NHN사내벤처 사례(온라인간병인플랫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심의중

### (2) 행정조사 기록, 민사소송과 연계 강화

- 공정위가 행정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인정하는 의결을 하더라도, 민사 법원에는 공정위의 조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해

기업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발생

\* (주)에스제이이노테크-(주)한화 :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기술자료 유용 사건

- 위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는 공정위에 문서송부촉탁을 했지만, 제3자인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한 의결서만 송부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는 미송부
- 행정조사제도와 법원의 민사소송 절차가 모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문서제출명령)

### (3) 기술침해 신고 활성화

- 중소기업은 기술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절실한 사안임. 기술침해가 인정되더라도 대기업의 불복으로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면 기업경영이 어려워짐. 기술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부처는 책임지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도 중요함. 정부가 지켜준다는 믿음이 생겨야 신고문화도 활성화 됨

## ③ 갑을관계 개선

### (1) 협동조합 공동사업시 공동행위 인정

- '19.8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조합·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였음
- 그러나, 중기부 고시('20.2.21)를 통해 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의 결정, 생산량 조절 등의 제한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조합의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우원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생법은 1)소비자의 범위를 최종소비자로 규정하고 2)하도급, 수위탁 거래의 경우에는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
- 현재 소비자 정의에 대해 중기부는 최종소비자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공정위는 B2B 비용 인상이 최종소비자에 전가될 우려로 반대 입장
- 공정위는 하도급, 수위탁 거래시 조합의 공동행위로 인한 납품단가 인상 시도 및 입찰담합 시도 등을 우려하여 반대(중기부도 반대)

## (2)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인정

### 가. 현 황

- '20년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원자재 가격 급등 당시 해외원자재 수입 대기업과 공급받는 중소기업간 가격인상 갈등 이슈 다수 발생
  - \* **제지-인쇄, 합성수지-플라스틱, 철강-파스너 등**
- 펄프, 철강 등 해외원자재 비중이 높은 제품의 경우 수요대기업은 가격인상분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공급받는 중소기업은 납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넛크래커 중소기업체는 수요대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원재료가격 인상폭과 인상시기 등 거래조건에 대해 정식으로 소통을 희망하였음
- 그러나, 현행법상 단체적 협상 과정이 부당한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계와 대기업체는 거래조건 협의에 나서는데 상당히 위축됨
-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지배력이 작은 중소기업(가맹점, 대리점)이 모인 단체가 단체적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을 기본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갑을관계 개선 필요

### 나. 카르텔 금지의 예외 제도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인가를 받으면 카르텔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마련  
(공정거래법 제40조 제2항)
- 과거 10년 이상 인가를 받아 시행되는 공동행위는 존재하지 않음.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고 평가됨
-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취지를 살려 다른 제도를 설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적용 배제 규정을 폭넓게 운용 필요

### 다.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외국의 특례제도

- 독일 : 경쟁제한방지법에 중소기업 카르텔 규정을 두고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목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카르텔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 공동행위를 통한 가격통제, 판매할당도 합리성을 갖추면 허용

- 호주 : 중소기업이 단체적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단체협상 제도를 운용. '21년 호주의 경쟁당국은 이 제도를 일괄 면제로 확대하였고 단체협상과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 사건에서 허용하고 있음
- 일본 : 일정한 협동조합의 행위에 경쟁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위한 단체협약제도도 마련하고 있음







#### 제4차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3高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주최 |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주관 |  국회의원 김경만·김교흥·김한정·이용빈·이용선·이원욱·이장섭·정태호